



# 월간 안사회계법인 재경저널

# 세무회계경영저널

eAnSe.com

30분내 Q&A답글 + 구독829-7575 010-2672-2250

Biz life partner, 온라인재경교육, e러닝, 전직원경영관리아카데미, CEO, CFO, CMO 등 경영진 휴대북, 관리자 점검표·실무자학습지

이달의 특집

## 2025 세금절약 가이드 (국세청)

2025 세금절약 가이드 (국세청)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FAQ (국세청)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개정안 시행 (중소벤처기업부)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 (AnSe consulting)  
← 경영관리·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

등록번호 영등포 라-0129 등록일 2003년 11월 11일 발행인겸편집인 : 이윤선  
발행처 (주)안건조세정보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84길 41(신길동) 안세빌딩 1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안건조세정보



# 월간 세무회계경영저널

+ 교육·훈련강의저널  
+ CEO·CFO·기업법무저널

www.eAnSe.com

월간 세무회계경영저널은  
고객회사와 기업재경실무자의  
“명료한 세무판단”,  
“투명한 회계처리”,  
“효율적 경영활동”  
에 도움을 드리고자,  
여러 회계법인이 연합하여  
공동제작하는  
회계세무재경 전문가의  
정보자료전략컨설팅지  
입니다.

## 7월의 세무일지

일 자	구 분
10(목)	법인·소득세(농특세 포함) 원천징수분 납부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레저세(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신고납부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납부 증권등거래세 신고납부
21(월)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25(금)	부가가치세 제1기분 확정신고납부 개별소비세 2분기 신고납부
31(목)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개별소비세(유류 등) 신고납부 교통세(교육세·주행세 포함) 신고납부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 납부 주민세 재산분 납부 지역자원시설세 주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이 달의 회계조세전략 핵심 point

- ✓ 비상장기업 가업승계시 상증법상 주식가치평가와 순자산가치 측정방법 ... 2
- ✓ 증여관계별 증여재산 공제 적용방법 ..... 3
- ✓ 해외주식·금융투자소득의 과세방법 ..... 4
- ✓ 기업의 급여·보수 인적용역대가 지급시 세금과 공과 등 ..... 5

## 이달의 특집

- ✓ 2025 세금절약 가이드 (국세청) ..... 6

## 회계정보

- ✓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FAQ (국세청) ..... 131

## 경영정보

- ✓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개정안 시행 (중소벤처기업부) ..... 139

- ✓ 부가세영세율과표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액 평가의 기준·재정 환율 (6월) ..... 144

# 민감한 회계조세전략

## 핵심 point..... 안세재경저널

### ◎ 비상장기업 가업승계시 상증법상 주식가치평가와 순자산가치 측정방법

- 안세재경저널 2025/6/4일자 통권 1730호

개념, 원칙	계산방법, 주의점 등, 관련 근거규정 요약내용
주당가치계산	① 상장사 : 평가기준일 전 2개월 + 후 2개월 = 4개월간의 증가평균 ② 비상장사(일반) : 주당순이익 3년 평균가치×60% + 주당 순자산가치×40%
순자산가액 계산방법	
1. 일반 원칙	법인의 자산가치의 법정 평가액 - 부채 = 순자산가액(≥0, 최소 0)
2. 재고자산 등	시가, 장부가액
3. 예금·채권 등	① 예금 등은 예입액 + 기간이자미수수익 ② 국공채 등 채권·유가증권의 시세(평가액)
4. 부동산 등	① (취득가액 -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과 법정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② 부동산 법정평가액 규정(토지는 개별공시가,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 아파트·대단위 상가 등은 국세청 일괄고시가격 등 )
5. 무형자산 등	선급비용과 무형자산은 차감함(없앰)
6. 권리확정금액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금액은 자산에 가산·합산함
7. 준비금·충당금	부채금액에서 제외(부채로 포함안됨)함 (단, 비용 확정된 충당금과 책임준비금 등은 부채로 반영함)
8. 영업권 금액	초과이익력 있는 영업권가액은 자산에 가산함(청산등 부실영업권은 제외)

◎ 증여관계별 증여재산 공제 적용방법

- 안세재경저널 2025/6/11일자 통권 1731호

증여관계	증여공제금액 계산방법, 적용조건 등
증여취소	증여 3개월 내 취소·반환시 모두 증여세 취소, 6개월 내 반환시 갈 때 증여과세 후 반환 시 비과세, 6개월 초과 반환되면 가고 오는 양방 모두 과세
배우자	소급 10년 단위 합 6억원 공제
직계존속	10년 단위 5천만원(미성년자이면 2천만원) 공제, 부모·조부모 증여액도 10년 합산하여 5천만원 증여공제 적용함(직계존속 모두 합해 5천만원 공제)
직계비속	자녀와 손자녀(배우자 포함) 증여시 10년 합산하여 과세(증여공제는 합 5천만원 적용)
기타공제	5년 내 합하여 부부합 1천만원만 공제 ① 6촌 이내 혈족 + 4촌 이내 인척 증여시 모든 증여 합하여 1천만원 공제함 ② 며느리나 사위에 증여도 부부 합해서 1천만원만 공제함
혼인공제	자녀가 부모로부터 혼인 전후 2년 이내 수증시 1억원 별도공제(부부 양가 합하면 2억이 됨)
출산공제	거주자가 자녀 출생일부터 2년 내에 직계존속 부모로부터 수증받은 금액에서 1억원 별도공제(단 혼인공제와+출산공제를 합하여, 10년 내 1억원만 공제 적용함)
가업승계	① 가업승계 출자지분 증여시 (주식가액 - 10억원)×세율 10% 적용(과표 120억 초과시 20%) 가업자산승계액은 300억(10-20년 경영), 400억(20-30년 경영), 600억(30년 이상 경영) 한도로 함. ② 요건 :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에게서 가업승계함.
창업자금	부동산 제외 창업자금 평가액(50억원 한도 - 5억 공제)×세율 10%의 증여세 부과(10년 이상 신규 고용시 100억원 한도증액)

◎ 해외주식·금융투자소득의 과세방법

- 안세재경저널 2025/6/18일자 통권 1732호

항목,구분	주식투자이익·차익	주식 지분의 배당소득 등
국내비상장중소기업	주식매각이익×세율 11%	금융소득합산과세 ⊖ 원천세율 15.4% 차감 선납 후 지급
비상장 대주주	주식매각이익×세율 33%	
상장사 소액주주	금융투자소득과세 폐기	
상장사 일반주주	금융투자소득과세×세율 22%	
상장사 과점대주주	금융투자소득과세×세율 33%	
해외주식직접투자	금융투자소득과세×세율 22%	금융소득합산과세×중소세율 ⊖ 해외원천징수감액함 (원천세 선납임)
해외주식 직접거래		
해외주식 현지 ETF		
역외펀드회사		

◎ 기업의 급여·보수·인적용역대가 지급시 세금과 공과 등

- 안세재경저널 2025/6/25일자 통권 1733호

세금과 공과금	근로소득(종속)	사업소득(독립)	기타소득(일시우발)
지급의무	근로제공	사업실적(특고)	외주하청자문
지급방법	매월 일정액	실적별 변동	일시우발적
정산방법	회사 연말정산	본인 증소신고	본인 증소신고
건강보험료	본인급여 3.545% 회사부담 3.545%	없음 지역가입	없음 지역가입부과
장기요양보험	건보료의 12.95% (본인 50%+회사 50%)	없음 (지역부과)	없음 (지역부과)
국민연금	본인급여 4.5% 회사부담 4.5%	없음 (지역부과)	없음 (지역부과)
고용보험료	•실업급여 본인 0.9% + 회사 0.9% •고용안정 회사 0.25%~0.85%	없음	없음
산재보험료	회사부담 0.56%~5.76%	없음	없음
소득세 등	다단계누진세율 (+지방소득세 10%)	3.3% 원천징수	8.8% 원천징수 (소득율 40%×원천징수율 20%)
사업소세	급여×0.5%(회사 부담)	없음	없음
부담합계	19.31%+소득세 등	원천징수세 3.3%	원천징수세 8.8%



# 2025 세금절약 가이드

- 국세청 -

## 01. 기초 세금상식

▶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부가가치세

- 상품(재화)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 그러나, 다음과 같이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교육관련 용역을 제공하는데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곡물, 과일,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 연탄·무연탄, 복권의 판매
  - 병·의원 등 의료보건용역
    - 다만,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의 진료용역은 2011. 7. 1. 이후 제공하는 용역부터 과세
    -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함)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면세)과 악안면 교정술(치아 교정 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면세)과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용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의 진료용역은 2014. 2. 1. 이후 제공하는 용역부터 과세
  -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업

- 도서, 신문, 잡지(광고 제외)

◎ 개별소비세

·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이외에 개별소비세와 개별소비세에 따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내야 합니다.

-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등과 수렵용 총포류
- 보석 및 귀금속류 (1개당 500만 원 초과분)
- 고급시계(1개당 200만 원 초과분), 고급용단(200만 원, ㎡당 10만 원 곱한 금액 중 큰 금액 초과분), 고급가방 (1개당 200만원 초과분, 2014.1.1.이후), 고급모피 등 (1개당 500만원 초과분), 고급가구(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 초과분), 정원 8명 이하 승용자동차 (경차 제외), 석유류, 유연탄 (2014.7.1.이후), 담배(2015.1.1.이후)
- 경마장(장외발매소를 포함), 경륜장(장외매장을 포함)·경정장(장외매장을 포함), 투전기 설치 장소, 골프장, 카지노 등 과세(영업)장소
- 유흥주점, 외국인 전용 음식점,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장소 등 과세유흥장소

◎ 소득세

· 사업자는 연간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사업자가 종업원을 채용하여 월급을 줄 때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사 업 자	신고·납부기한		신고·납부할 내용
부 가 가치세	법인사업자	1기 예정 1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	4. 1. ~ 4. 25. 7. 1. ~ 7. 25. 10. 1. ~ 10. 25. 다음해 1. 1. ~ 1. 25.	1. 1. ~ 3. 31.의 사업실적 4. 1. ~ 6. 30.의 사업실적 7. 1. ~ 9. 30.의 사업실적 10. 1. ~ 12. 31.의 사업실적
	개인사업자 (일반)	1기 확정 2기 확정	7. 1. ~ 7. 25. 다음해 1. 1. ~ 1. 25.	1. 1. ~ 6. 30.의 사업실적 7. 1. ~ 12. 31.의 사업실적
	개인사업자 (간이)	확정신고	다음해 1. 1.~1. 25.	1. 1.~12. 31.의 사업실적

※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일반과세자에 한함)  
- 사업부진자, 조기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납부와 예정고지납부 중 하나를 선택

소득세	개인사업자 (과세·면세)	확정신고	다음해 5. 1.~5. 31.	1. 1.~12. 31.의 연간 소득금액
		중간예납 (11.15. 고지)	11. 1.~11. 30.	중간예납 기준액의 1/2 or 중간예납 추계액
개 별 소비세	과세 유흥장소	다음달 25일까지		1개월의 유흥음식요금
	과세장소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석유류, 담배는 다음달 말일까지)		3개월의 입장인원
	과세물품 제조·수입			3개월의 제조장 반출가격(기준가격 초과분)
	과세 영업장소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1년간 총매출액
사 업 장 현황신고	개인 면세사업자	다음해 1. 1. ~ 2.10.		1. 1.~ 12. 31.(폐업일)의 면세수입금액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 고	원천징수 의무자	일반사업자	다음달 10일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
		반기납부자	7. 10. / 다음해 1. 10.	

※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25일(석유류,담배는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은 [유흥음식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과세유흥장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02. 사업자등록 안내

◎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단,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됩니다.(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http://www.hometax.go.kr)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사업개시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 계획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확정일자 신청할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
- 전대차계약서 사본 및 전차동의서(사업장을 전차한 경우), 다만, 임대인의 동기가 필요없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사본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도면 1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 ※ 법인의 경우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정관,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경영자)
- 신탁 계약서 1부(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신탁 재산 사업자등록의 경우)
- 임대주택 명세서 1부(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 서식,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
- 미성년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1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5호의2 서식)

·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발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전확인 대상 사업자의 경우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발급될 수 있습니다.

◎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고 구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가 되려면 간이과세 적용신고도 함께 하여야 합니다.

· 간이과세 적용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해당란에 표시하면 됩니다.

**간이과세 적용기준**

- 대상사업자 : 연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격)가 1억 400만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
- 1억400만 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이라도 아래 사업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간이과세 배제사업
    - ① 광업
    - ② 제조업(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 \* (간이 허용)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화점, 기타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고시' 참조)
    - ③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및 상품중개업
    - ④ 부동산매매업

- 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⑥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⑦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
  - ⑧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
  - ⑨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 ⑩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
  - ⑪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 ⑫ 건설업(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 \* (간이 허용)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기타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고시 참조)
  - ⑬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 \* (간이 허용)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복사업, 기타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고시 참조)
- 일반과세 적용을 받는 다른 사업장이 있는 경우 (다만, 개인택시·용달차운송업, 이·미용업 등의 간이과세는 당해 사업 연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경우 계속 적용)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매출액 합계가 연간 공급대가 1억400만 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 개인 :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원 중 큰 금액)
  - 법인 : 공급가액의 1%
-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상품 구입 시 부담한 부가 가치를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 03.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전에

▶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하시면 등록절차가 쉬워집니다.

◎ 과세업종인지 면세업종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은 과세사업자등록을, 면제되는 사업은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에는 과세사업자등록만 하시면 됩니다.

#### ◎ 사업자의 유형을 먼저 결정하여야 합니다.

- 사업형태를 개인으로 할 것인가, 법인으로 할 것인가 또는 사업자의 유형을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개인과 법인은 창업절차 등 세법상 차이점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선택하여야 하나, 선택하기가 어려울 경우 먼저 개인으로 시작을 하고, 나중에 사업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는 다시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지만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에 업종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 관련법규의 허가·등록·신고대상 업종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허가·등록·신고 업종인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시 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약국·음식점·학원 등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업종인 경우 관련 인허가기 관으로부터 먼저 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 ◎ 공동사업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이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 또한 공동으로 하는 사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챙깁니다.

- 사업자등록신청 시 업종에 맞는 구비서류를 잘 챙기셔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국세청 누리집(국세정책/제도 → 사업자등록안내) 참조 또는 '126 국세상담센터'에 문의

## 04. 사업자 유형

### ◎ 사업형태에 따른 구분

사업자 유형은 사업형태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있습니다.

#### •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란 회사를 설립하는데 상법상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그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휴·폐업이 비교적 간단하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란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 법인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도 포함되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 과세유형에 따른 구분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다만, 과세와 면세 겸업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과세사업자로 발급됩니다.

#### • 과세사업자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도 소득세 납세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 사업규모에 따른 구분

개인 과세사업자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 합니다.

#### •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매출 합계액, 부가가치세 포함)이 8,000만 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형 장소는 4,800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일반 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사업과 관련된 물건 등을 구입 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매출액이 1억 400만 원(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 별로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개인과 법인의 세제상 주요 차이

구 분	개인기업	법인기업
납 부 세 금	소득세	법인세
세 율 구 조	6 ~ 45% (8단계)	9 ~ 24% (4단계)
납 세 지	사업자 주소지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기 장 의 무	간편장부 / 복식부기(원칙)	복식부기
외 부 감 사 제도	없음	직전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법인 등

## 05. 확정일자 신청안내

▶ 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이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 ◎ 확정일자란?

-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합니다.

### ◎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확정일자는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 확정일자 신청대상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의 보증금 환산액)이 지역별로 다음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 역	환산보증금
서울특별시	9억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광역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 부산광역시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경기),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5억4천만원
기타지역	3억7천만원

※월세의 보증금 환산 : 월세×100

◎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면

·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규사업자**

-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법령에 의하여 허가·등록·신고 대상인 경우)
- 사업장 도면(건물 공부상 구분등기 표시된 부분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 본인 신분증(대리인이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사본) 또는 인감증명서(사본) 등과 대리인 신분증)  
 ※ 사업자등록신청 시 임대차계약서의 사업장소재지를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소재지와 다르게 기재한 경우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사업자**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임대차 계약이 변경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사업장 도면(건물 공부상 구분등기 표시된 부분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 본인 신분증(대리인이 신청 시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또는 인감증명서(사본) 등과 대리인 신분증)

## 06. 민원서류 신청 시 구비서류

◎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허가 전인 경우 허가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3.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신청할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
4. 도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5.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경영자)
6. 동업계약서(공동사업인 경우)
  - ※ 신청인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등 위임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법정대리인 동의서\*(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 서식

### ◎ 화물운송·건설기계대여업 사업자등록 신청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건설기계대여업 신고증(건설기계대여업), 자동차등록원부(화물운송업) 사본
3. 기타 참고 서류
  - 위·수탁 관리 계약서, 지입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납세자 인감증명서 1부, 외국인 제외)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등 위임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개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1.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
2. 사업자등록증 원본
3.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신청할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
4. 도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5.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허가 전인 경우 허가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신청인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등 위임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교회 등 고유번호 신청

1.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2. 법인설립허가증(소속단체는 소속확인서)
  - (대표자가 소속확인서 내용과 상이한 경우 대표자 선임근거서류 추가)
3. 정관, 협약 등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또는 단체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서류
4. 대표자 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임명장, 대표자확인서(선임서), 재직증명서 등
5.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신청할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
6. 단체직인(신청서·위임장에 날인된 경우 생략 가능)

※ 신청인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등 위임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휴)폐업신고

1. (휴)폐업신고서

2. 사업자등록증 원본

※ 신청인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등 위임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신청 및 휴폐업신고는 인터넷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 민원증명 신청

1. 민원신청서

2. 신청인(본인 또는 대리인) 신분증

3. 위임하는 경우,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신분증(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사본), 기타의 경우 위임자 본인의 신분증(사본) 또는 인감증명서(사본)

※ 민원증명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모바일 홈택스,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 주민센터 등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관련 문의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126 국세상담센터

## 07.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큰 피해를 입습니다.

◎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옵니다.

-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상 대표인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세금이 고지됩니다.
- 더구나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되어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 실제로는 소득이 없는 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되므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어 공매되는 등 재산상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 명의를 빌려간 사람의 재산이 있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소유재산이 압류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처분하여 밀린 세금에 충당합니다.
- 체납사실이 금융회사 등에 통보되어 은행대출금의 변제요구 및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는 등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이 외에도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는 등 생활에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 명의를 빌려간 사람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관리되므로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명의대여로 인한 피해 사례

**사례 1**

- 가정주부인 김○○는 절친한 이웃 박△△(女)가 김○○명으로 사업자등록만 한 후 곧 폐업하겠다고 하여 50만원을 받고 박△△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줌.
- 박△△는 김○○명으로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하면서 많은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음.
- 김○○는 이후 2년여 동안 명의대여 사실을 잊고 생활함.
- 박△△가 신고·납부하지 않은 세금 4천만원이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김○○에게 부과됨.
- 세금의 체납으로 김○○의 소유주택 및 예금이 압류됨. (예금 1천 2백만원은 세무서에서 체납 세금에 충당함)
- 금융회사 등에 체납사실이 통보되어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됨.

**사례 2**

- 한○○씨는 생활정보지에 실린 구직광고를 보고 취직을 하였는데 사장인 최△△가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신분증을 달라고 해서 무심코 건네줌.
- 최△△는 한○○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은행 예금계좌 개설·신용카드 가맹을 하고 6개월간 유흥주점 사업을 함.
- 최△△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세금 2천 5백만원이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한○○에게 부과됨.
- 최△△는 행방불명이며 세금체납으로 한○○의 예금이 압류되고 신용카드 사용도 정지됨.(예금 8백만원은 세무서에서 찾아 체납 세금에 충당함)
- 한○○씨는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의 변제 독촉도 받고 있음.

※ 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어 사업이 개시된 이후에는 명의자 본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절대 명의를 빌려 주어서는 안됩니다.

구 분	홈택스 누리집 (www.hometax.go.kr)
제공내용	◇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등록상태(계속사업자, 휴·폐업 여부)</li> <li>· 과세유형(과세유형전환 이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가장 최근 유형전환된 날짜, 간이과세자 간 변경 이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또는 발급 불가능하게 된 날짜)</li> </ul>

제공내용	◇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시 • 사업자등록 유무
서비스 명칭	•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기타 → 사업자상태)
공동인증서	•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 공동인증서(로그인) 불필요 •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 공동인증서 필요

## - 사업 운영 단계(사업자의 세금신고·납부) -

### 0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 부가가치세란 어떤 세금인가?

-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 1) 일반사업자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 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 1.~6. 30.	예정신고	1. 1.~3. 31.	4. 1.~4. 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 1.~6. 30.	7. 1.~7. 25.	개인사업자
		4. 1.~6. 30.	7. 1.~7. 25.	법인사업자
제2기 7. 1.~12. 31.	예정신고	7. 1.~9. 30.	10. 1.~10. 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 1.~12. 31.	다음해 1. 1.~1. 25.	개인사업자
		10. 1.~12. 31.	다음해 1. 1.~1. 25.	법인사업자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4월·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징수해야 할 금액이 50만 원 이상일 경우)가 예정 고지되고, 고지된 금액은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됩니다.

2) 간이과세자(1년에 1회 신고)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1. 1.~12. 31.	다음해 1. 1.~1. 25.

※ 다만, 7. 1.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 (간이 → 일반)와 예정부과기간 (1. 1.~6. 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 1.~6. 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 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의 구분

구분	기준금액	세액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10,400만 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이상	매출세액(공급가액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10,400만 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	(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매입 시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그 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므로 세부담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1) 2021.7.1. 전

업종	부가가치율
전기·가스·증기·수도	5%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2) 2021.7.1. 이후

업종	부가가치율
1.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2.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3. 숙박업	25%
4.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한다), 정보통신업	30%
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한다),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6. 그 밖의 서비스업	30%

## 《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10 - 부가가치세 》

Q1.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별도로 사무실을 구하지 않고 집에서 운영하고 있어 사업장을 집 주소로 등록하였습니다. 동일한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나요?

A1. 사업자의 주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자등록만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사업장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한 주소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의 주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동일한 주소에서 다른 업종을 추가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을 통해 해당 업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89, 2023.08.31.

[제목] 주소 또는 거소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해당여부 및 다수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회신]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위한 고정된 장소를 두지 않는 경우에 같은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 가능한 것이며,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등록만 하는 것입니다.

Q2. 창업을 준비 중입니다. 사업 준비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2.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1.1. 또는 7.1.)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과세기간: 1기(1월1일6월30일), 2기(7월1일12월31일)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포함)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사업자번호 전환

홈택스(www.hometax.go.kr) > 계산서·영수증·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주민등록번호 수취분 전환 및 조회

-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사례
  - 1기(1. 1. ~ 6. 30.)에 매입이 발생한 경우 : 7. 20.까지 사업자등록 신청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 2기(7. 1. ~ 12. 31.)에 매입이 발생한 경우 : 익년 1. 20.까지 사업자등록 신청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적용시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합니다.  
(예시) 사업개시일이 7. 1.이고 6. 30.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 1기(1. 1.~ 6. 30.)신고 시 반영

**Q3.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던 상가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포괄양도로 계약하려고 하나 양도자와 양수자가 포괄양도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나요?**

**A4. 사업의 포괄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양도자는 양수자와 거래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다만, 사업의 포괄양도가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양도 또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업의 포괄양도임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양수자는 매입세액불공제, 과소신고(초과환급)가산세 및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대리납부 방법**

- 양도자 - 공급시기에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 양수자 -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

**● 대리납부제도 이용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 양도자 -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매출 정상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고서상 \*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란에 기재하여 공제
- 양수자 -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Q4. 간이과세자는 연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다는데, 부가가치세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A4. 간이과세자는 납부의무가 면제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재고품등 재고납부세액과 사업자 미등록부가세는 납부의무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해당 세액 및 가산세는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간이과세자가 예정부과기간(1월~6월)에 대한 예정신고 시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를 면제하여 신규 사업자, 휴업자, 폐업자 및 과세유형전환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가액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판단합니다.

(예시) [환산공급대가] 해당 간이과세기간 공급대가가 2,000만 원인 경우

구분	환산공급대가(공급대가×12개월/사업개월수)	납부의무 면제
9월 1일 사업개시	6,000만 원(2,000만 원×12개월/5개월)	×
4월 1일~9월 30일 휴업	4,000만 원(2,000만 원×12개월/6개월)	○
5월 31일 폐업	4,800만 원(2,000만 원×12개월/4개월)	×
과세유형전환 (간이→일반) (7월 1일 전환)	4,000만 원(2,000만 원×12개월/6개월)	○

Q5. 개인용달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입니다. 도매업 사업자를 신규로 발급받고자 하는데, 도매업은 간이과세가 불가하여 일반과세로 사업자등록 시 기존 개인용달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인가요?

A5. 일반적으로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일반)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이나,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의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백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 2023. 12. 31. 개정 전 간이과세 적용 공급대가 기준금액: 8천만 원

● 일반과세 다른 사업장 보유 등에 따른 일반과세 전환 예외 업종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1억 4백만 원 미달 전제)

개인택시운송업,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그 밖의 도로화물 운송업, 이용업 및 미용업

▶ 관련 법규

-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5항)

●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사례

폐업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 재화의 공급		폐업 이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 간주공급 (폐업 시 잔존재화)
일반적인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 중 건물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 과세표준 = 취득가액 × (1 5%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양수자 대리납부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	다음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 재화가 사업에 실제 사용된 날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 · 당초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

Q6. 신규 간이과세 사업자입니다. 거래처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사업자등록한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요?

A6.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면 다음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것으로서, 변경 이후 거래처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영수증 발급 업종 사업자 제외)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때 공급대가를 공급가액과 세액(공급가액의 10%)으로 구분하여 발급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간이과세자

2021. 7. 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직전연도 공급대가(연 매출액)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 간이과세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영수증 발급 업종 중 소매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전세버스운송업, 운수업, 주차장운영업 등

▶ 관련 법규

· 간이과세자 영수증 발급 등(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2호)

Q7.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작년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로 전환되었는데 올해에도 종이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를 계속 발급해야 하나요?

A7.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로 전환된 이후로는 계속해서 전자세금계산서

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분 포함)이 합계액이 8천만 원 이상인 해의 다음해 제2기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날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습니다.(법인 사업자는 공급가액 상관없이 의무 발급)

중전에는 전자발급 의무기간을 다음해 제2기 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 제1기 과세기간으로 정하였으나, 2023. 7. 1. 이후 의무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023. 7. 1.부터 계속하여 전자발급의무로 발급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예) 2022년 공급가액 1억 원 이상인 경우 → (2023.7.1.부터계속) 전자발급 의무

예) 2023년 공급가액 8천만 원 이상인 경우 → (2024.7.1.부터계속) 전자발급 의무

●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의 합계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그 이후 그 이후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이 8천만 원 미만이 된 개인 사업자를 포함)

연도별 기준금액	발급의무 개시일
2021년 공급가액 2억 원 이상인 경우	2022. 7. 1.부터 의무발급 대상
2022년 공급가액 1억 원 이상인 경우	2023. 7. 1.부터 의무발급 대상
2023년 공급가액 8천만 원 이상인 경우	2024. 7. 1.부터 의무발급 대상
2024년 공급가액 8천만 원 이상인 경우	2025. 7. 1.부터 의무발급 대상

●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 (미발급) 공급가액 2%, (종이발급) 공급가액 1%

▶ 관련 법규

- 세금계산서 등(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Q8. 당사에서 제조한 두부와 김치를 상품 종류 및 규격별로 고유상표를 부착하여 용기에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두부와 김치의 판매는 면세인지요?

A8.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 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었으나,

민생안정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개정(2024. 7. 1. 시행)됨에 따라 제조시설을 갖추고 단순가공식품(된장·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계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을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 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어 판매하는 경우 2025. 12. 31.까지 공급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일면세하는 미가공식품 등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면세하는 미가공식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12.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공 식품		⑤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며,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관련 법규

- 면세하는 미가공식품 등의 범위(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Q9. 동물병원에서 반려묘의 관절염이 의심되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MRI 촬영을 하려는데요. 동물병원에서 MRI 촬영이 부가가치세 면세라고 하는데 맞는 것이지요?

A9. 당초, 반려동물의 영상진단의학적 검사(X-ray, 초음파, CT, MRI 등)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기존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던 것이나, 반려동물 약품구입 등 동물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2023. 10. 1. 이후 영상진단의학적 검사(X-ray, 초음파, CT, MRI 등)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상기 영상진단의학적 검사 외 진찰, 입원 등 다수의 항목이 당초 과세에서 면세로 변경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의 부가가치세액 거래징수 미적용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318[법령해석과-4061], 생산일자 : 2016.12.14.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5, 생산일자 : 2016.08.30.

서면-2016-부가-2959[부가가치세과-234], 생산일자 2016.02.02.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0, 생산일자 2015.01.19.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업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중개보수를 수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른 거래 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진료용역의 분류	당초 (질병 예방 목적의 진료용역)	2023.10.1. 이후 면세 확대 (질병 예방 목적외 치료 목적 추가)
진찰 및 입원	-	· 진찰, 입원관리
접종 및 투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방접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HPPL(종합백신)</li> <li>- 광견병</li> <li>- 신종플루</li> <li>- 전염성기관지염</li> <li>- 코로나장염</li> <li>- FVRC(고양이종합백신)</li> <li>- 전염성복막염</li> <li>- 고양이백혈병바이러스</li> <li>- 고양이ringworm백신</li> </ul> </li> <li>· 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장사상충, 회충약 등 예방약 투약</li> <li>- 옴, 진드기, 벼룩, 사상균증 등 피부 질환 및 외부기생충 예방제 도포</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방접종, 조제/투약은 항목 신설로 신설 (기존 제외항 범위 삭제)</li> <li>※ 완제품 형태의 제제를 동물병원 내 단순 구입하는 경우는 과세</li> </ul>
검사	▶ 검사 병리학적 검사	▶ (기존) 병리학적 검사(혈액, 조직, 세포, 뇨, 분변, 항생제감수성, 전염병키트검사 등)
		▶ 영상진단의학적 검사(X-ray, 초음파, CT, MRI 등)
		▶ 계통별 기능검사(순환기계, 신경계, 안과계, 근골격계 등)
		▶ 내시경검사(내시경, 검이경 등)
증상에 따른 처치	-	▶ 구토, 설사, 기침, 소양증, 발작, 황달, 파행, 호흡곤란, 혈변, 혈뇨, 마비 증상에 따른 처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	▶ 수술 : 중성화 수술	▶ 내과/피부과 :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위장염, 식이 알러지, 기관지염, 방광염, 췌장염, 피부사상균증, 점액성 이첨판막변성, 만성 신부전, 비심인성 폐수종, 부신피질기능 항진증, 고혈압, 당뇨병, 단두종증후군, 간질, 폐렴, 급성신부전, 심장사상충증

		<p>▶ 안과 : 결막염, 유루증, 고양이 허피스 각막염, 각막궤양, 백내장, 건성각결막염, 안검염, 각막염 비궤양성, 포도막염, 녹내장, 각막이상증, 제3안검 탈출증, 고양이 호산구성 각결막염, 첩모중생, 초자체변성, 상공막염, 안검종양, 첩모난생, 안검내번·외번</p> <p>▶ 외과 : (기존)중성화 수술, 무릎뼈 탈구, 고양이 회음 요도루 창냄술, 유선 종양, 추간판 질환, 위내 이물, 제대 탈장, 자궁축농증, 전방십자인대 파열, 항문낭염, 고관절 이형성증, 장내 이물, 담낭점액낭종, 비장종양, 골절, 방광결석, 식도 이물, 담석증, 드레싱</p> <p>▶ 응급중환자의학과 : 위장관 출혈(혈토, 혈변), 심인성 폐수종, 빈혈, 백혈구 이상, 고양이비대성 심근병증, 고혈당, 복막염, 흉수, 혈소판 감소증, 중독, 저혈당, 위장관 폐색, 핏뇨, 부정맥,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응고장애, 혈전질환, 심폐소생술, 쇼크처치, 산소공급</p> <p>▶ 치과 : 구내염, 치은염, 고양이치아흡수성병변, 치근단농양, 발치, 스케일링</p>
--	--	--

Q10. 사업상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거래처에서 대금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는데 발급대상인가요?

A10. 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금이나 지체상금, 위약금, 변상금 등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

- 소유재화의 파손, 훼손, 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 도로공사 및 분쟁과학수사 등 고의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 공급물량 차이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 부동산을 타인이 점유한 권한 없이 차용부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법

- 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없이 지급받는 손실보상금 및 이주보상비

- ▶ 관련 법규  
 ● 재화의 공급 등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9조, 14조)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4-0-1

## 0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개요

2025년 5월은 지난 해(2024년 귀속)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 하는 달입니다. 법에서 정한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5월 1일부터 6월 2일\*(5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까지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

#### ◆ 신고대상자

- 거주자 :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 비거주자 : 국내에서 발생한 원천소득 중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 ◆ 신고대상 소득

- 종합소득금액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을 합계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별지 제40호 서식)\*를 합니다.
- 퇴직·양도소득 :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별개로 확정신고(별지 제40호의2 및 제84호 서식)\*\*를 하여야 합니다.

#### ◆ 신고기간(2025년 신고분)

구 분	과세기간	신고기간
일반적인 경우	2024. 1. 1.~12. 31.	2025. 5. 1.~5. 31.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2024. 1. 1.~12. 31.	2025. 5. 1.~7. 1.

과세기간 중 사망(출국)시 2024. 1. 1.~5. 31.중 사망(출국*)시	2024. 1. 1.~사망(출국)일 2024. 1. 1.~12.31. 2025. 1. 1.~사망(출국)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 (또는 출국일 전날까지)
---	--	--

\* (출국자 구분신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을 폐업하지 아니하고 이민 등으로 출국하는 경우에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은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하며, 출국하는 다음날부터 국내사업장을 폐업하는 날까지는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근로소득, 퇴직소득,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단, 근로소득 및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시 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음)
-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단, 간편장부대상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에 한함)
-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2018.1.1.부터)
-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미달 소득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자

#### ◆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종교인소득 (2018.1.1.부터)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시에 합산신고 하지 아니한 자 및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퇴직소득을 합산신고하지 아니한 자
-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원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2인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소득을 받았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연금소득, 퇴직소득·종교인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 2020. 1. 1.부터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홈택스로 소득세를 신고하시면 홈택스(국세)·위택스(지방세) 실시간 연계시스템을 통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번에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종합소득세 납부 및 환급

##### ◆ 납부

자진납부계산서(영수증서)에 납부할 종합소득세액을 기재하여 5. 1.~5. 31.(성실 신고확인대

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5. 1.~6. 30.)에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하며, 홈택스 등을 통해 전자납부도 가능합니다.

◆ 분할납부(자진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	분납할 세액	분납기한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초과금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금액 2개월 이내
2천만 원을 초과	납부할 세액의 50%이하	

◆ 환급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에 기재한 은행(우체국)의 예금계좌로 환급금을 송금받거나 환급통지서를 통해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10 - 종합소득세

Q1. 복식부기의무자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 혹은 세액감면 등을 받으면 외부조정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나요?

A1. 복식부기의무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는 사업자(「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6조의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등, 제104조의9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의 어느 하나의 규정만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제외)에 해당하면 외부조정대상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 자기조정과 외부조정 구분

구분	내 용	대 상 자
① 자기조정	납세자 자신이 스스로 세무조정을 하여 신고	② 외의 사업자
② 외부조정	반드시 세무사(세무사인 공인회계사 포함)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	영 131조의2에 규정된 사업자

● 외부조정 대상사업자(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19귀속분부터 사업을 영위자산은 양도등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이 다음 각 목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 업종을 겸영하거나 복식부기 의무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체 수입금액을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으로 본다. (주업종 :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text{주업종 수입금액} \div \text{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 \times \frac{\text{주업종의 수입금액}}{\text{주업종외의 기준수입금액}}$$

업종별	직전연도 기준수입금액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억 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하도급을 갖춘 건설업은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창작 및 예술관련 사업	3억 원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1억 5천만 원

\*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축물 지양건설업에 한하는 경우만 한정하며)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제외)

2.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 ①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신고한 받은 자
- ② 직전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다만, 성실 제47조의2의2영문의 “성실사업자”에 해당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한 자(기장을 포함한 자)에 한하며 제120조제8호 제1항의 “추계신고자”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함
- ③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는 자  
(단, 제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6호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등, 제104조의9(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른 규정만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제외함)

**Q2. 경품에 당첨되어 기타소득이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나요?**

A2. 아래 무조건 분리과세와 무조건 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을 제외한 기타소득의 소득금액 기준 연간 300만 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납세자가 해당 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나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으나,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조건부과세)

기타소득을 종합과세 방식으로 신고할 경우 실제 결정세액이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작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하여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조건부과세를 적용함.

1) 무조건 분리과세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 승마투표권 · 승자투표권 · 소싸움경기투표권 ·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 등
- 서화 ·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운용수익을 연금 외 수령한 금액

2) 무조건 종합과세(반드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과세 해야 함)

- 뇌물
-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

○ 기타소득 과세 방법

-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됩니다. 다만, 복권당첨금 등과 같이 일부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대부분 원천징수로 종결)를 허용하고 있으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Q3. 복식부기 의무자도 추계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A3.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폐지·기록하지 않고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 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와 장부미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무신고가산세 = 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부정무신고는 무신고납부세액의 40%와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
-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 종합소득산출세액 × (미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 기장의무자 구분

구분	대 상 자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외 사업자
간편장부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 신규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결정·경정 수입금액 포함, 사업용유형자산 양도금액 제외)의 합계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 기재부령으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는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임

● **복식부기** 혹은 **간편장부** 판단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업 종	직전연도 기준수입금액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 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포함),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운수업	1억 5천만 원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 5백만 원

**Q4. 공동으로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4. 거주자가 비소형주택을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간주임대료 계산대상 해당여부는 각 거주자별로 판단하되, 간주임대료와 월 임대료를 합산하여 각 공동명의 주택별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각 공동명의 주택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배분하여야 합니다.

\* 주거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간주임대료 대상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주택의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 간주임대료

= (보증금 - 3억 원\*)의 적수 × 60% × 1/366 × 정기에금이자율(2024귀속: 3.5%)

- 해당 임대사업부분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 보증금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부터 순서대로 차감

\*\* 추계신고·경정하는 경우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금융수익 차감하지 않음

<사례> 부부 갑과 을이 비소형주택 4채를 단독 및 공동으로 임대

※ 임대사업부분 발생 금융소득 없음, 임대기간은 모두 1.1.~12.31. (단위: 원)

구분	보증금	월세	소유형태 (갑 : 을 지분율)
A주택	400,000,000	1,200,000	갑 단독소유
B주택	500,000,000	-	50 : 50
C주택	30,000,000	1,300,000	30 : 70
D주택	170,000,000	-	10 : 90

**Q5. 국민연금을 받는데, 근로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A5. 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소득세법 제70조)**

1.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합계)에 있는 사람(거주자 등)\*은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과세기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신고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함
2.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계약금의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3.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미달 등으로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또는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있는 사람이 기장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다음연도에 이월결손금공제를 받지 못함)

**●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소득세법 제73조)**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2. 퇴직소득만 있는 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정산을 완료한 경우
3.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4.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간편장부 대상자로서 받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5.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
6. 1 및 2의 소득만 있는 자
7. 2 및 3의 소득만 있는 자
8. 2 및 4의 소득만 있는 자
9. 2 및 5의 소득만 있는 자
10.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자 (단,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은 제외함)
11. 1~8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단,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은 제외함)
12.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받은 자로서 합산하여 연말정산 및 퇴직소득 세액정산을 완료하여 확정신고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
  - ① 근로소득
  - ② 공적연금소득
  - ③ 퇴직소득
  - ④ 종교인소득
  - ⑤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
13. 국외원천 근로소득 또는 국외원천 퇴직소득이 있는 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연말정산을 한 경우
14.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자

15.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는 경우

● 사례로 보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해당 과세기간 퇴직소득이 발생한 자 중>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확정신고 대상 아님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확정신고 대상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확정신고 대상 아님

<해당 과세기간 공적연금소득\*이 발생한 자 중>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확정신고 대상

분리과세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 확정신고 대상 아님

분리과세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 확정신고 대상 아님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 공적연금을 제외한 사적연금의 합계액이 연 1,500만 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 분리과세연금소득이 발생한 자 중>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확정신고 대상 아님

분리과세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 확정신고 대상 아님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확정신고 대상 아님

Q6. 종합소득세 관련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A6.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업용계좌는 금융회사 등에서 신규 개설한 계좌는 물론,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도 사업용계좌로 사용 가능합니다.

● 사업용계좌란?(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①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 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와 ②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다음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 금융거래상 채무불이행으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그 사실이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
- 외국인 불법체류자

● 사업용계좌 신고·사용의무자: 복식부기의무자(소득세법 제160조의5)

-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됩니다.
- 보험모집인, 학원강사 등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인적용역자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므로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용계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 복수사업장(복수업종)이 있는 경우 기준수입금액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208 ⑦)
-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장이 2 이상이거나, 다른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하여 업종별 기준금액을 판단합니다.
- 사업기간이 1년이 안되더라도 연간으로 환산하지 않고, 단순 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text{주업종 수입금액} + \text{주업종 외 수입금액} \times \frac{\text{주업종 기준수입금액}}{\text{주업종 외 기준수입금액}}$$

※ 주업종: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 예시) 복수업종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환산 사례

사업장별	A (부동산임대 또는 인적용역)	B (제조)	C (도매)	합 계
수 입 금 액	2천만 원	1억 원	5천만 원	1억 7천만 원
주업종 판단	주업종 외	주업종	주업종 외	

$$1\text{억 원(주업종)} + 2\text{천만 원} \times \frac{150,000,000}{75,000,000} + 5\text{천만 원} \times \frac{150,000,000}{300,000,000} = 1\text{억 6천5백만 원}$$

※ 판정: 환산결과 주업종(제조업) 기준금액인 1억 5천만 원 이상이므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

● 사업용계좌의 신고기한(소득세법 제160조의5 ③, ④)

1. 신고기한

구 분	신 고 기 한
최초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직 이외의 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li> <li>• 전문직 사업자: 사업개시일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 제외)</li> </ul>
변경 및 추가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적인 경우: 5월 31일(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li> <li>•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6월 30일</li> </ul>

\* 복식부기의무자가 새로운 사업장을 개시하는 경우 최초 신고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도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임

2.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고, 1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계좌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영208의5 ②, ③)

● 사업용계좌 미신고·미사용 시 제재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미신고하거나 미사용한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는 물론,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사유에 해당하여 조사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일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및 특례규정이 배제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1. 사업용계좌 미신고·미사용 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의8)

가) 미사용 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text{사업용계좌 미사용금액}^* \times 0.2\%$$

\*사업용계좌 사용의무 있는 거래금액(소득세법 160의5①각 호) 중 미사용분에 한함  
 - 2011.1.1. 이후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는 분부터 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수입금액이 증가함으로써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소득세법 시행령 147의5①)

나) 미신고 시(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text{Max} \begin{cases} \text{미신고한 기간의 수입금액}^* \times 0.2\% \\ \text{사업용계좌 사용대상금액}^{**} \text{의 합계액} \times 0.2\% \end{cases}$$

\*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신고일 전일까지의 일수(미신고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신고기간을 적용)의 수입금액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함

•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 미신고기간 / 365(윤년의 경우 366)

\*\* 사용의무가 있는 과세기간의 거래금액 합계액(소득세법 제160의5 ① 각 호)

【참고】 2019.1.1. 이후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신규사업장 사업용계좌를 미신고하고 기존 사업장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미신고가산세 배제 (법81조의8)

2.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④)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등의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사유에 해당함 (소득세법 제80조 ② 5호)

사업용계좌 사용·신고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영업상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경정할 수 있습니다.

Q7. 금융소득이 6천만 원일 때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세액이 발생하나요?

아니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사례> 2024년도 종합소득현황

은행예금이자: 60,000,000원, 종합소득공제는 5,100,000원으로 가정

(계산내역)

(1)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 60,000,000원

(2)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① 금융소득을 기본세율로 과세 시 산출세액

$$(2천만 원 초과금액 + 금융 외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times \text{기본세율} + 2천만 원 \times 14\%$$

$$= (40,000,000 - 5,100,000) \times \text{기본세율} + 20,000,000 \times 14\%$$

$$= (34,900,000 \times 15\% - 1,260,000) + 2,800,000 = 6,775,000원$$

② 금융소득을 원천징수세율로 과세 시 산출세액

$$\text{금융소득금액} \times 14\% + (\text{금융 외 종합소득금액} - \text{종합소득공제}) \times \text{기본세율}$$

$$= 60,000,000 \times 14\% + (0 - 5,100,000) \times \text{기본세율}$$

$$= 8,400,000원$$

③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①과 ② 중 큰 금액인 8,400,000원

④ 기납부세액: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  $60,000,000 \times 14\% = 8,400,000원$

⑤ 종합소득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

$$= 8,400,000원 - 8,400,000원 = 0원$$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

·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금융회사 등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이 경우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도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비과세 대상 또는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되지 않습니다.

● 비과세 ·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 비과세: 공익신탁 이익,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자, 재형저축 이자 · 배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이자 · 배당 등(세부요건 생략)

- 무조건 분리과세: 경력대금 이자, 비실명 금융소득,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등

●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 25%로 원천징수된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여부 판단 시 제외하며 무조건 종합과세합니다.

-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예: 국외원천 이자 · 배당)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세액계산 특례(소득세법 제62조)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는 경우 세액계산의 특례가 적용되며 산출세액은 비교과세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 비교과세란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할 경우의 소득세가 종합과세하지 않을 경우의 소득세보다 적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할 때 산출세액과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의 산출세액을 서로 비교하여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합니다

## Q8.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도 반드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나요

A8.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추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 개업자(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제외)와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는 국세청에서 정한 간편장부를 기장하여 계산한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사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기장의무·비율 판단 기준

국세청 누리집 [국세청\(www.nts.go.kr\)](http://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장부기장의무 안내 > 기장의무 판단

아울러, 간편장부대상자도 복식부기에 의해 신고할 수 있으며, 기장을 근거로 한 재무상태표 등 서식과 그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20%를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기장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장부란?(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종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합니다.

● 기장세액공제 적용 제외자(소득세법 제56조의 2 ②)

-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사업자
- 기장세액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증명서류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 하지 아니한 사업자(천재·지변 등 일정한 사유 해당시는 제외)

**Q9.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 시 어떤 경우에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A9. 간편장부대상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의 합계액이 아래의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로 추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수입금액(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업 종 별	직전연도 수입금액	당해연도 수입금액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 원 미만	3억 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백만 원 미만	1억 5천만 원 미만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백만 원 미만	7천5백만 원 미만

\* 2023년 귀속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은 직전연도 기준수입금액 3천6백만 원을 적용

<참고사항>

- 직전연도와 당해연도 수입금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2025년 귀속분)
  - ⇒ 직전연도(2024년) 수입금액 3천6백만 원 미만 요건과 당해연도(2025년) 수입금액 7천5백만 원 미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단순경비율 적용

\*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 한편, 다음의 사업자는 위의 수입금액 기준에도 불구하고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 (1) 다음에 해당하는 전문직 사업자
  -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 (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 중 의무가입기한(요건 해당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직전수입금액 2천4백만 원 이상인 경우 3개월)이내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 (가입하지 아니한 해

당 과세기간에 한함)

- (3)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3회 이상 통보받고 그 합계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거나, 5회 이상 통보받은 사업자(통보받은 내용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에 한정)
- ㉠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업종 경영 혹은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경비율 판단**  
 사업자가 업종을 경영하거나, 2 이상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아래의 식에 의해 계산한 금액으로 판단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7항)  
  

$$\text{주업종 수입금액} + \text{주업종 외 수입금액} \times \frac{\text{주업종 기준금액}}{\text{주업종 외 기준금액}}$$
 ※ 주업종: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 **공동사업자의 경비율 판단(소득세법 기본통칙 70-0...2 ㉢)**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장부기장의무 등을 적용하며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 전체의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
- **내가 하는 사업의 단순경비율을 확인하는 방법**  
 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경비율 및 추계방법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 표준 확정신고 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확정하고 이를 고시함  
 → 국세청 누리집(nts.go.kr) ⇒ 알림·소식 ⇒ 고시·공고·행정예고 ⇒ 고시
- **간편장부 기장 시 혜택**
  - ①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20%) 적용 배제
  - ② 결손금 발생 시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 ③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각종 감면 및 세액공제 가능
  - ④ 부가가치세 매입·매출장 작성의무 면제

Q10. 과거 한식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폐업하고 최근에 중국식 음식점을 창업하였는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한가요

A10. 가능합니다.

다만,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생계형창업중소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창업중소기업이 수

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병역 이행기간은 6년 한도로 연령에서 차감)
- \*\*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8천만 원 이하(과세 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

【참고】 2022. 1. 1. 이후 과세기간부터 생계형창업중소기업의 수입금액 4,800만 원 → 8,000만 원  
상향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하는 경우.

단, 2026.1.1. 이후 창업부터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를 제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과 같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  
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①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  
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에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를 제외
- ②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④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  
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창업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데, 기존 사업의 업종  
과 새로운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 분류표 상의 세분류로 구분합니다  
(조특령5 ⑮).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세분류는 표준산업분류번호 5자리 중 앞에서부터 4  
자리의 숫자를 말합니다.

→ 국세청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 연계표 확인 방법:

홈택스 누리집(www.hometax.go.kr)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자료  
조회 ⇒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 조회 ⇒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 연계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면, 한식 음식점업(세분류 코드: 5611)을 영위하던 사람이 중국  
식 음식점업(세분류 코드: 5612)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세분류가 다르므로 다른 업종을 창  
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한식 음식점업을 영위하던 사람이 중국식 음식점업을  
2027.12.31.까지 수도권과밀 억제권역 외에서 새로 창업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서 청년 창업중소기업 또는 생계형 창업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업종

- 광업·제조업·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 물류산업 (육상·수상·항공 운송업, 화물 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육상·수상·항공 운송지원서비스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선업,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 임대업)
- 음식점업
- 정보통신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전자금융업무, 온라인소액투자 중개업, 소액해외송금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 포함, 변호사업·변리사업·법무사업·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수의업·「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제외)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자영예술가·오락장 운영업·수상오락 서비스업·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제외)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과 관광공연장업)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 감면율(2018.5.29. 이후 창업)

구분		2025.12.31. 이전 창업	2026.1.1. 이후 창업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중소기업	-	-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50%	5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 내 창업중소기업	50%	25%
	수도권 및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100%	75%
창업중소기업		50%	50%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100%	100%
창업보육센터사업자		50%	50

### 03.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

발급의무 개시일	발급의무 대상
2022. 7. 1.	직전연도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
2023. 7. 1.	직전연도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
2024. 7. 1.	직전연도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이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발급·전송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 부과

- ※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 지연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1%), 지연수취 가산세(공급가액의 0.5%)
  - 단,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가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시 1%,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 시 1%
- ※ 미전송 가산세 공급가액의 0.5% 지연전송 가산세 공급가액의 0.3%

◎ 전자계산서(면세)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

발급의무 개시일	발급의무 대상
2022. 7. 1.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2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023. 7. 1.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024. 7. 1.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총수입금액 :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 공급가액 및 면세 수입금액의 합계액임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 누리집에서 발급
-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사업자(ASP, ERP)를 통한 발급
- ◆ 기타 발급방법(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 ※ 전화 ARS(☎126-1-2-2)로 발급, 세무서 방문하여 대리발급 신청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기한

- ◆ 발급기한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단,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 전송기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혜택

- ◆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 ◆ 부가가치세 등 신고 시 집계표 개별명세 작성 불필요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건당 200원, 연간 1백만 원 한도)
  - 대상자 : 직전 공급가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  
(2023. 7. 1. 발급분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도 발급 세액공제 적용)
- ◆ 전자계산서 발급세액공제(건당 200원, 연간 1백만 원 한도)
  - 대상자 :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04.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를 시행

전문직, 병·의원,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사업자 등은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금액(부가세 포함)에 대하여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외]

◎ 적용대상 업종(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 3)

구 분	업 종
사업 서비스업	번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행정사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기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무도유흥주점업, 일반 및 생활숙박시설운영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고시원 운영업, 숙박공유업
교육서비스업	일반교습 학원, 예술 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교습학원, 운전학원, 태권도 및 무술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 목적으로 한정한다),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교육기관

<p>그 밖의 업종</p>	<p>가전제품 소매업, 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비만 관리 센터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마사지업(발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사지업으로 한정한다),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의류 임대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포장이사운송업으로 한정한다),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운동 및 경가용품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악기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공구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제품 소매업*, 가전제품수리업 가정용직물제품 소매업, 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구두류 제조업, 남자용 겔옷 제조업, 여자용 겔옷 제조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에 한정),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의복 및 기타가정용저품수리업, 중고가전지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p> <p>* 거울·액자(내용물 없는 것)·주방용 유리 제품·관상용 어항 소매업은 2016. 7. 1 부터 의무발행업종이며, 그 외 제품은 2023. 1. 1. 거래분부터 의무발행업종임</p> <p>백화점, 대형마트, 체인화편의점, 기타 대형 종합소매업,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곡물, 곡본 및 가축사료 소매업, 육류 소매업, 자동차 중개업,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주차장 운영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보일러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업, 여행사업,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실외 경기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p> <p>* 포장이사운송업은 2014.1.1.부터 의무발행 업종이어서 제외함</p>
<p>통신판매업</p>	<p>전자상거래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판매업</p> <p>*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에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소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p>

※ 밑줄 친 업종은 2024. 1. 1.거래분부터 발급의무 시행

-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 하여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소비자는 당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홈택스(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수정 → 자진발급분 소비자등록, 자진 발급분 사업자 등록)에서 해당 현금영수증의 승인번호, 거래일자, 거래금액을 입력 후 등록하면 소득공제

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발급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2018. 12. 31. 이전 거래분에 대하여는 미발급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금 등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누리집 「hometax.go.kr」, 스마트폰 「구글스토어/애플 앱스토어 - 국세청 홈택스 앱」 또는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로 문의바랍니다.

## 05. 원천세 신고·납부

### ◎ 원천징수는 누가, 어떤 경우에 해야 하나?

- ◆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하여야 합니다.
- ◆ 원천징수 대상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봉급, 상여금 등의 근로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 퇴직소득, 연금소득
  - 상금, 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
  -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
  -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

### ◎ 원천징수 세액의 납부

- ◆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은행·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회사에 납부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반기별 납부 승인 또는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상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7. 10.까지, 하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 해 1. 10.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반기별로 제출하면 됩니다.

#### 반기별 납부

- 반기별 납부대상자
  - 직전 과세기간(신규사업자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금융보

협업 제외), 종교단체로서 세무서장의 승인 또는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

· 신청기간

- 상반기부터 반기별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 직전연도 12. 1.~ 12. 31.
- 하반기부터 반기별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 6. 1.~ 6. 30.

◎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 원천징수할 세액 = (지급액 - 필요경비) × 20%

◆ 필요경비

- 지급금액의 60%를 인정하는 경우
  - 일시적 인적용역(강연료, 방송해설료, 심사료 등)
  -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지상권 설정대가
  -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은 원고료·인세 등
  - 상표권, 영업권, 산업상 비밀 등의 자산이나 권리의 대여금액
  - 통신판매 중개업자를 통한 연수입 500만 원 이하 물품·장소의 대여소득
- 지급금액의 80%를 인정하는 경우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부상
  -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부상
  -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1억 원 이하 또는 10년 이상 보유 후 양도분 90% 인정)
  -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주택임주 지체상금
- 기타 :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지급금액의 3%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전문지식인 등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 의사 등이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등

◎ 봉사료의 원천징수

◆ 원천징수 대상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봉사료를 받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를 접대부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봉사료 금액이 매출액의 20%

를 초과하는 경우

◆ 원천징수 세액

봉사로 지급액의 5%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 지방소득세 소득분의 원천징수

- ◆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는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소득분 으로 함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10 - 원천세

### Q1. 일용근로자에게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어떻게 하나요?

A1. 일용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고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할 소득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출세액 = {(일급액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일 15만원)}×6%
- 원천징수할 세액 = 산출세액 - (산출세액×55%)

·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예시

2024. 5. 일용근로소득(일당 20만 원씩 5일 근무)을 지급한 경우

① 2024. 6. 10. 까지 원천세 신고납부

※ 원천징수할 소득세 : 1,350원 X 5일 = 6,750원(지방소득세 670원 별도)

② 2024. 6.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Q2.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언제, 어떻게 납부하는 건지요?

A2. 원천징수무자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율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소득 지급일(반기별 납부자의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 국세청홈택스>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일반신고

· 원천징수세액의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 한국은행또는채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원천징수세액(「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상여 등 제외)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Q3. 지급명세서는 언제 제출하나요?

A3.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근로·퇴직·연말정산사업소득	소득이 귀속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
사업(연말정산사업소득 제외)·종교인·연금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
이자·배당소득	소득이 귀속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
기타소득 등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사업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말일
인적용역 기타소득(2024년 지급분부터 제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 지급명세서의 제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이자소득, 배당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봉사료,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자·배당·근로·연말정산사업소득·퇴직소득 등 원천징수시기특례가 적용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사업·근로·퇴직·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연도 3. 10.),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그 소득 지급일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대상 사업 소득과 인적용역 기타소득의 경우 그 소득 지급일(연말정산사업소득은 해당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은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과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Q4. 지급명세서에 지급액을 과다하게 잘못 작성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A4. 지급명세서를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며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란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급명세서상 지급액을 과다 또는 과소하게 잘못 신고하여 수정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출된 지급명세서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다음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지급명세서의 경우 :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1.(다만,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
- \*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

#### Q5. 외부강사나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중 어느 소득에 해당되나요?

A5. 소득의 종류는 소득자와 원천징수의무자 간의 고용관계 여부, 고용기간, 임금의 지급방법, 용역의 계속·반복적 재공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
  - 일용근로소득 : 임금을 일급 또는 시급으로 지급하고, 고용기간이 3개월(건설공사의 경우 1년) 미만
  - 근로소득: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하거나, 고용기간이 3개월(1년) 이상
-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
  - 기타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
  - 사업소득: 계속적·반복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

-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 급여 · 보수 · 세비 · 임금 · 상여 ·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일용근로자의 범위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타자·취사·경비 등의 업무
      -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 · 감독하는 업무
      -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 기타소득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사업소득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 ·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Q6. 근로소득자가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되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6.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시행령」 별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경로  
국세청 홈택스 >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Q7. 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와 출산·보육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알려주세요.

A7.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는 산전후 휴가급여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나,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하는 산전후 휴가급여 등(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대위신청한 것을 포함)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다음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 1)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최대 2차례에 걸쳐 지급받는 급여 전액(2021년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2024년에 지급받은 급여를 포함)
- 2)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6세 이하(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함)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 · 비과세소득

근로소득 중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사립학교법」 제 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을 포함)과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Q8. 출산·보육수당이 비과세일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A8. 소득세법 제12조 3호 머목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는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이 출산보육수당으로 비과세되며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합니다.

#### ● 지급명세서 제출면제 등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가목부터 사목까지, 카목, 타목, 하목, 너목, 버목, 저목의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에서 제4호까지, 제8호의 소득

### Q9.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과 인적용역 기타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A9.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인적용역 기타소득에 대하여 간이지급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 중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인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사업소득의 경우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와 사업소득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자소득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합니다.

· 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세율은 100분의 25입니다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로 합니다 .

**Q10. 인적용역 기타소득 지급액이 125,000원 이하이면 원천징수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A10. 기타소득 지급 시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건별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기타소득은 의제 필요경비율 60%가 적용되므로, 만일 의제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하는 경우 기타소득 수입금액이 125,000원 이하이면 기타소득 금액이 5만 원 이하로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건별 적용범위

기타소득금액(세액공제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외수령한 소득 제외)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과세최저한 기준의 건별은 기타소득의 발생근거, 지급사유 등을 고려하여 거래별로 판단합니다.

●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나,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나, 「소득세법」 제 21조제1항제15호(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의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 06.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할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 무신고 가산세

- 일반적인 경우 :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다만, 아래 사업자는 다음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 그 신고 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말 하며,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함.

법인세,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의무자 max (①,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20% ② 수입금액×7/10,000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①+②)	① 무신고납부세액×20% ② 영세율과세표준×5/1,000

- 부정행위인 경우 : 위 일반적인 무신고가 아닌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다만, 아래사업자는 다음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법인세,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의무자 max (①,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40% ② 수입금액×14/10,000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①+②)	① 무신고납부세액×40% ② 영세율과세표준×5/1,000

※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60%

### ◎ 과소신고·초과환급 가산세

- 일반적인 경우 :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는 다음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 등*×10%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①+②)	① 과소신고납부세액 등×10% ②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5/1,000

\*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함.

- 부정행위인 경우 : 위 일반적인 과소신고·초과환급 신고가 아닌 부정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는 아래 ①, ②를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①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40%

② 일반과소신고 가산세=(과소신고납부세액 등-부정행위로 인한 과소 신고납부세액 등)×10%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아래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법인세,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의무자 (max(①, ②)+③)	①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40% ②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14/10,000 ③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10%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① + ② + ③)	①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40% ②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10% ③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5/1,000

※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60%

◎ 납부지연가산세

·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내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초과하여 환급받은 경우에 부과합니다.

- ① 납부지연가산세 = 무납부(과소납부)세액 × 0.022% × 경과일수
- ② 환급지연가산세 =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0.022% × 경과일수  
 ※ 경과일수 = 납부기한 (환급받은 날)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
- ③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무납부(과소납부) 세액 × 3%

◎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소득세법 제149조에 따른 납세 조합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아래 ①과 ②중 적은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 ① 미납세액 · 과소납부세액 × 3% + 미납세액 · 과소납부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22/100,000
- 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50%  
 다만, 무납부고지 시 부과하는 가산세(미납세액 · 과소납부세액 × 3% + 미납세액 · 과소납부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 × 22/100,000)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 가산세 감면

·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기한 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면합니다(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것은 제외)

내 용		가산세	감면율
수정신고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이내	과소신고·초과환급가산세	90%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
기한 후 신고·납부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이내	무신고가산세	50%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 상기 가산세 이외에도 개별세법에 그 밖의 가산세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 사업 폐업 단계(폐업신고) -

### 01.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 사업을 시작할 때와 같이 그 종결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커다란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 ◎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는 어떻게 하나?

- ◆ 국세청 누리집에서 다운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홈택스 가입자로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 ◆ 또한, 면허 또는 허가증이 있는 사업일 경우 당초 면허·허가를 받은 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단, 음식점업, 숙박업, 세탁소, 이·미용실, 약국, 피씨방, 비디오방, 통신판매업 등의 인·허가 업종은 세무서나 시·군·구청 중 한 곳에서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대상업종은 가까운 민원실이나 126 국세상담센터로 문의).

#### ◎ 폐업신고 등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 폐업신고를 한 경우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 폐업일까지의 실적에 대한 가산세 등을 추가부담하게 되어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않아 사업 인수자가 계속 사용하면 사업자 명의 대여에 해당되어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 면허·허가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년 1. 1.을 기준으로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 ◎ 폐업신고 후 폐업사실증명원을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제출하여야 보험료가 조정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02. 사업을 폐업할 때 꼭! 알아야 할 세금신고 사항

### ◎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 ◆ 폐업 즉시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납부

-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폐업시기	신고납부대상
1기(상반기) 중 폐업 시	1. 1.~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
2기(하반기) 중 폐업 시	7. 1.~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

- ◆ 폐업 시 남아있는 제품이나 상품 등의 재화  
자가공급에 해당되므로 폐업 시 잔존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  
건물, 차량, 기계 등 감가상각자산도 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시가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사업의 포괄적 양도  
사업의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으며, 이 경우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 ◆ 1. 1.~ 폐업일까지의 종합소득을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 1.~ 5. 31.까지 확정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 폐업한 사업과 관련된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는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 근로자를 위한 세금(연말정산) -

### 01. 근로소득과 연말정산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급여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우선 간이세액 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2월분 월급을 줄때 1년 분의 정확한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 맞춤형 원천징수세액 선택
  - 근로자가 본인의 부담 수준에 맞게 원천징수세액을 간이세액표의 80%, 100%, 120%로 선택 가능합니다.
- 급여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 다른 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을 한 후 다른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세 계산

• 계산절차

연	간	급	여	액					
(-)	비	과	세	소	득				
총	급	여	액						
(-)	근	로	소	득	공	제			
근	로	소	득	금	액				
(-)	각	종	소	득	공	제			
과	세	표	준						
(×)	세	율							
산	출	세	액						
(-)	세	액	감	면	및	세	액	공	제
결	정	세	액						
(-)	기	납	부	세	액				
납	부	(환	급)	할	세	액			

• 근로소득공제(상용직 공제한도 2,000만원)

총급여액	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의 70%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350만원+500만원 초과 금액의 40%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750만원+1,500만원 초과 금액의 15%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200만원+4,500만원 초과 금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1억원 초과 금액의 2%
일용근로자	1일당 15만원

· 서울(2024년 귀속)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35%	1,544만원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 주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 인적공제 및 연금보험료 공제

과세표준	공제요건 및 공제한도액
기본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본인포함) : 1인당 150만원</li> <li>• 직계존속 : 60세 이상, 근로자의 배우자(연령제한 없음)</li> <li>• 자녀·형제자매 : 20세 이하, 60세 이상, 위탁아동 : 18세 미만(보호기간이 연장된 위탁아동은 20세 이하) 생계급여수급자(연령제한 없음)</li> </ul>
추가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녀자공제 : 50만원</li> <li>• 장애인 : 1인당 200만원</li> <li>• 경로우대 : 1인당 100만원(70세 이상)</li> <li>• 한부모공제 : 100만원(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시 한부모공제 적용)</li> </ul>
연금보험료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보험료 : 전액</li> </ul>

· 특별소득공제

구 분	공제금액 및 공제한도액
보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고용보험료 전액</li> </ul>
주택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마련저축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연 400만 원 한도)</li> <li>•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600~2,0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 2,000만 원</li> <li>-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 1,800만 원</li> <li>- 만기 15년 이상 기타 : 800만 원</li> <li>-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 600만 원</li> </ul> </li> <li>* (주택요건) 기준시가 6억원 이하</li> </ul>



특별 세액 공제	의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액공제율 : 세액공제 대상액의 15%(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li> </ul>
	교육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액공제대상 교육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취학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300만 원 한도, 대학생의 경우 900만 원 한도, 본인·장애인의 경우 한도 없음)</li> </ul> </li> <li>•세액공제율 : 세액공제 대상액의 15%</li> </ul>
	기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액공제대상 기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치자금기부금 한도액 : 근로소득금액 × 100%, 세액 공제율 : 10만 원 이하 100/110, 10만 원 초과 15%(3천만 원 초과분 25%)</li> <li>- 고향사랑기부금 한도액 : 500만 원, 세액 공제율 : 10만 원 이하 100/110, 10만 원 초과 15%</li> <li>- 특례기부금 한도액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100%</li> <li>- 우리사주조합기부금 한도액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30%</li> <li>- 일반기부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한도액(①+②)</li> <li>①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액} × 10%</li> <li>② (㉠, ㉡ 중 m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액) × 20%</li> <li>㉡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기부금</li> </ul> </li> </ul> </li> <li>·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한도액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액) × 30%</li> <li>* 세액공제율 : 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 15%(1천만 원 초과분 30%) -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 3천만원 초과 : 40%(2024.12.31.까지)</li> </ul> </li> </ul>
	표준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소득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연 13만 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li> </ul>
기타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인 세대주(종합소득금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제외)</li> <li>-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임차</li> <li>- 월세 지출액(1,000만 원 한도)의 15%(총급여 5천5백만 원(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 원) 이하 17%)</li> </ul>

## 02. 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소득요건, 나이요건 제한 있음)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보험

료의 12%(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 공제 대상

세액공제 대상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보장성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12%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15%

\* :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

\*\* :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 등에 '장애인전용 보험'으로 표시된 보험

### ◎ 공제시기

- 보험료 납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액공제

### ◎ 근로자가 부담할 보험료를 회사가 지급

- 보험료를 사용자가 지급하여 주는 경우 보험료 상당액은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 세액공제합니다.
- 다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단체보장성보험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맞벌이부부가 계약자는 본인, 피보험자는 배우자로 보험 가입

- 보험료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하였을 때 공제 가능하므로,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료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다만,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 ◎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

- 보험계약자가 소득요건 또는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당해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 피보험자가 태아인 보장성 보험

- 태아는 아직 출생 전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료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일시 납부한 보험료

- 보험계약기간이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인 보험의 보험료를 2019년 6월 일시에 납부한 경우 납부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세액공제하며, 월별로 안분하지 않습니다.

◎ 연도 중 해약한 보험의 보험료

- 해당 연도에 불입한 보험료는 보험을 해약하더라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미납분 보험료 공제 여부

- 보험료는 당해 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 가능하므로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실제로 납부한 연도에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 2018년 귀속부터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도 공제대상에 추가 되며,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 03. 의료비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당해연도 1. 1.~12. 31.까지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의 15%(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치료비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세를 계산(연말정산)할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 그러나, 지출된 의료비를 전부 공제해 주는 것은 아니고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에서 70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 다만, 근로자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6세 이하 부양가족, 중증질환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와 임신을 위해 지출하는 난임시술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는 추가로 공제됩니다.

$$\text{총급여액} = \text{연간 급여액} - \text{비과세 소득}$$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액의 계산

- 일반적인 경우 (700만원 한도)

$$\text{의료비총액} - (\text{총급여액} \times 3\%) = \text{공제대상의료비}$$

- 공제되는 의료비가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① 한도초과금액 = 의료비총액 - (총급여액×3%) - 700만원
- ②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중증질환자 의료비와 난임시술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합계액
- ①과 ② 중 적은 금액 + 700만원 = 공제대상 의료비

## ◎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 공제대상 의료비
  - 치료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불한 비용
  - 치료 등을 위한 의약품(한약포함) 구입비용(보약 제외)
  - 장애인 보장구·의사처방에 의한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1인당 50만원 한도)
  - 보청기 구입비용
  - 건강검진료
  - 노인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비용(200만원 한도)
- 공제제외 의료비
  - 미용·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 ◎ 의료비 세액공제 절차

-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연말정산 시 근무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의료기관(약국)이 발행한 영수증(홈택스 [www.hometax.go.kr](http://www.hometax.go.kr)에서 제공)
  -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료비 부담 내역서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소득공제 자료에서 제공)
  - 장애인, 65세 이상자를 위한 의료비의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증명서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장애인등록증(장애인 수첩) 사본
    - 기타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
- ※장애의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처음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 04. 교육비 세액공제제도

### ◎ 국내 교육비 공제

-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세를 계산(연말정산)할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를 위해 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및 수업료와 기타 공납금, 보육비용 및 수강료 등과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 교육기관에는 초·중·고·대학 및 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뿐만 아니라 학점은행제·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및 직업 훈련과정도 포함되며,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도 해당됩니다.
  - 방과 후 학교 수강료, 교과서대, 급식비도 공제됩니다(어린이집·유치원생·초·중·고등학생).
  - 현장학습비(1인당 30만 원)와 교복구입비(1인당 50만 원, 중·고등학생)도 공제됩니다.
  -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 ※학원 수강료는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세액공제 대상 한도액

본 인	직 계 비 속 등	
전액 (직장에서 보조받은 비과세되는 학자금은 제외)	영유아·유치원생·취학전 아동	1인당 300만원
	초·중·고등학생	1인당 300만원
	대학생	1인당 900만원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 액

### • 계산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치원생 자녀교육비가 250만원이고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 200만원 중 직장에서 받은 비과세 학자금이 100만원인 경우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액 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의 교육비 공제액 250만 원</li> <li>- 본인의 교육비 공제액 20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li> <li>- 합계 : 350만 원</li> </ul> </li> </ul>
--

### ◎ 국외 교육비 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국외교육기관에 낸 입학금·수업료, 기타 공납금 등이 공제됩니다.
  - 국외 근로자인 경우
    - 본인 및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부양가족
  - 국내 근무자인 경우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학생. 단,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중학생의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 세액공제 대상 한도액
  - 국내 교육비와 같음
- 제출서류
  -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영수증
  - 국외 교육비공제 적용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교육비 세액공제 절차

- 교육비 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연말정산 시 근무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교육비 납입영수증(홈택스 [www.hometax.go.kr](http://www.hometax.go.kr)에서 제공)
  - 교육부, 여성가족부 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교육비 납입내역서
  -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근무처에 이미 제출한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05. 주택자금 소득공제

###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포함)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또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하고 그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공제한도 400만 원) 합니다.

※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하여 400만 원 한도(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도 소득공제 가능)

####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 갱신일 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을 포함
  -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 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 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
-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 전세와 월세 보증금을 위해 차입한 자금
-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한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이자율(1,000분의 35)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2024. 3. ~ : 3.5%)
    - 공제시 필요한 서류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사본,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계좌이체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예외적으로 세대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포함)인 근로자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 하고 금융회사·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 환액에 대해 아래의 한도로 공제합니다.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이고 비거치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기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2,000만 원	1,800만 원	800만 원	600만 원

【공제한도 종전규정】

	2004.1.1. 이후	2009.1.1. 이후	2012.1.1. 이후	2015.1.1. 이후	2024.1.1. 이후
상환기간	15년 이상	15년 이상	15년 이상	10년 이상	10년 이상
공제한도	1,0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300, 1500, 1800만원)	800만원 (600, 1800, 2000만원)

- ※ 2019년~ 2023년 차입분은 '기준시가5억 원으로상향조정
- ※ 2014년 ~2018년 차입분은 '국민주택규모 기준 삭제' 및 '기준시가 4억원으로 상향 조정'
- ※ 2013년 이전 차입분은 종전 규정(국민주택규모 기준 및 기준시가 3억원)을 적용

## ◆ 공제대상자

- 근로자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배우자는 떨어져 있어도 동일세대로 봄)
-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자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 필요)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

-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또는 10년 이상\*일 것
  - \* 2009. 2. 12.부터 1년간 서울지역 외의 미분양주택 또는 신규분양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차입하는 경우 상환기간 5년 이상인 경우 포함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부터 3월 이내에 차입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 = 소유자” 요건 위반 시 요건 위반일 이후부터 불공제(이전분은 공제)

## ◆ 소득공제 배제

-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소득공제 배제
  - ※ 2014. 1. 1. 이후 과세기간 중 2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 '3개월 초과 기준' 삭제

## ◆ 세대원인 근로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공제요건

-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아니할 것
- 취득한 주택에 세대원인 해당 근로자가 실제 거주할 것

## 06.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30%, 40%)를 공제합니다.

## ◆ 신용카드 등 공제비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액 :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40%를 소득공제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공제율
신용카드	15%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해당)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40%

◆ 공제대상

- 근로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사용액(기본공제대상자로서 나이제한 없음)
  - 형제자매 및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사용액은 제외

◆ 공제금액 및 공제한도

- 공제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의 25%) × (15%~40%)
- 공제한도 : Min(연간 300만 원\*)
  -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 250만 원
  -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액, 대중교통사용분 공제액, 도서·공연·산문·영화관람료 등 사용분 공제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연간 300만 원 한도)을 추가공제 ⇒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00만원
  - 2025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공제(한도 : 100만원)

◆ 공제금액 계산방법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금액 0원
- 공제금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에 해당하는 금액
  - ① 신용카드 사용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합계액-전통시장사용분-대중 교통이용분-도서·공연 등 사용분-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사용분)×15%
  - ②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사용분[전통시장·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이용(사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30%
  - ③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30%
  - ④ 전통시장 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40%
  - ⑤ 대중교통 이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40%
  - ⑥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서 차감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① : 최저사용금액 × 15%
    - ① < 최저사용금액 ≤ (①+②+③) : ① × 15% + (최저사용금액 - ①)× 30%

- 최저사용금액 > (①+②+③) : ①×15%+(②+③)×30% + (최저 사용금액 - ①-②-③)×40%

- ⑦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액,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액, 도서·공연·신문·영화관람료 등 사용분 공제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한도 : 300만원)
- ⑧ 2025년 사용금액 중 2024년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10%(한도 : 100만원)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것

- 사업관련비용 지출액
-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자동차 구입비용. 단, 중고차 구입금액은 10%를 사용금액에 포함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지불액
-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보육비 등
-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등 포함)·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리스료(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금융·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
- 기부금(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받은 금액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 ※ 다만, 우체국 택배,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골프장, 스키장, 기타 운동시설 운영, 보건소에 지급하는 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포함
- 면세물품 구입비용(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법 제121조의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 적용 여부

구분	특별공제 항목	신용카드공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취학전 아동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그 외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불가

※ 취학전 아동의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체육시설 등의 수강료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07. 영수증을 챙기세요.

▶ 다음의 영수증을 모으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등의 혜택으로 더 많은 혜택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 현금영수증

• 물건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아 놓으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신용카드 영수증

• 신용·직불·기명식선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기명의로 아닌 다른 가맹점명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업소를 여신전문금융협회에 신고한 후 위장가맹점으로 확정되면 여신전문금융협회에서 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 의료비 영수증

• 병·의원의 치료비, 치료 등을 위한 의약품구입비, 건강검진료 등 가족의 의료비 지출액에 대하여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외국의료기관에 지출한 치료 비용은 제외

### ◎ 보험료 영수증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소득공제, 일반보장성보험료는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맞벌이부부인 경우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 교육비 영수증

• 교육기관에 납입한 가족의 수업료, 입학금, 응시수수료, 입학전형료, 보육비용, 취학 전 아동의 학원 수강료 등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정치후원금 영수증

- 일반 국민이 정당(후원회 및 선관위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연말정산 시 10만원까지는 100/110의 세액공제를 받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100(3천만원 초과분은 25/10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기부금 영수증

- 수재의연금, 불우이웃성금, 장학금, 종교단체 기부금 등을 낸 경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한 경우에도 「봉사일수×5만원」의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봉사일수=총봉사시간/8시간 (소수점 이하 1일로 계산)

## 08. 연금과 세금

### ◎ 연금소득의 범위

- ◆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으로 합니다.

#### ◆ 과세대상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경우의 그 연금
- 기타 위와 유사한 연금 형태로 받는 소득

### ◎ 연금소득의 구분

#### ◆ 연금계좌(사적연금)

-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설정하는 계좌 (퇴직연금계좌)

#### ◆ 공적연금

-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 비과세 연금소득

- ◆ 다음의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지역연金の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퇴직유족연금·퇴역유족연금·장해유족연금·상이유족연금·순직유족연금·직무상유족연금·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비공무상장해연금·비직무상장해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 연금소득세 계산법

◆ 계산절차

연 간 연 금 액
(-)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 과 세 소 득
총 연 금 액
(-) 연 금 소 득 공 제
연 금 소 득 금 액
(-) 각 종 소 득 공 제
과 세 표 준
(×) 세 율 (6%~45%)
산 출 세 액
(-) 각 종 세 액 공 제
(-) 기 납 부 세 액
납 부 ( 환 금 ) 할 세 액

◆ 연금소득공제

총연금액	공 제 액
350만 원 이하	전액 공제
350만 원 초과 700만 원 이하	350만 원 + 3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700만 원 초과 1,400만 원 이하	490만 원 + 7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1,400만 원 초과	630만 원 + 1,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연 900만 원 한도)

◎ 연금소득 과세방법

-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연계노령·퇴직연금)은 매월 연금을 지급할 때 지급기관에 간이세액표에 따라 우선 원천징수하고, 1월분 연금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종합소득과세).
- ◆ 연금계좌의 경우 지급기관에서 3%~5%의 세율로 원천 징수를 한 후 연금 수령자가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 등을 제외한 총연금액이 연 1,500만원 이하인 사적연금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1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퇴직소득과 세금

- ◆ 퇴직소득(퇴직금)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며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 ◆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과세되며, 퇴직금을 줄 때 그 소속 기관이나 사업자, 퇴직연금 사업자 등이 이를 원천징수합니다.
- ◆ 퇴직으로 인한 소득 중 다음 소득은 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비 과 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애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해보상금, 일시보상금, 장애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 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공무원상요양비·요양급여·장애일시금·비공무상 장애일시금·비직무상 장애일시금·장애보상금·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유족일시금·퇴역유족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퇴직유족연금일시금·퇴역유족연금일시금·순직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부가금·퇴직유족연금부가금·퇴역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순직유족보상금·직무상유족보상금·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재해부조금·재난부조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애·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 퇴직소득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계산

가. 과세표준(소득세법 제14조 ⑥)

퇴직소득과세표준은 퇴직소득금액에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나. 산출세액(소득세법 제55조)

1) 종전(2015. 12. 31. 이전) 계산방법

거주자의 퇴직소득 산출세액은 2013. 1. 1. 이후 근속연수 해당분과 2012. 12. 31. 이전 근속연수 해당분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며, 2013. 1. 1. 이후의 근속연수는 전체 근속연수에서 2012. 12. 31. 이전 근속연수 해당분을 빼서 계산한다(①+②).

① 2013. 1. 1. 이후 근속연수 해당분

$$\text{퇴직소득 산출세액} = \frac{\text{퇴직소득과세표준}}{\text{근속연수}} \times 5 \times \text{기본세율} \div 5 \times \text{근속연수}$$

② 2012. 12. 31. 이전 근속연수 해당분

$$\text{퇴직소득 산출세액} = \frac{\text{퇴직소득과세표준}}{\text{근속연수}} \times \text{기본세율} \times \text{근속연수}$$

· 소득세법 부칙 (11611호, 2013. 1. 1.)

제22조(퇴직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이 이 법 시행 후에 발생하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근무를 시작하여 이 법 시행 후에 퇴직한 자의 경우 해당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이 법 시행 전의 근속연수 비율(2012. 12. 31. 까지의 근속연수를 전체 근속연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개정(2016. 1. 1. 이후) 계산 방법

거주자의 퇴직소득 산출세액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① 퇴직소득 과세표준

$$\text{환산급여} \{ (\text{퇴직소득금액} - \text{근속연수공제}) \div \text{근속연수} \times 12 \} - \text{환산급여공제}$$

<근속연수공제(2023.1.1.개정)>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100만원×근속연수
6~10년	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 - 5년)
11 ~ 20년	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연수 - 20년)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차등공제
8백만 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
7천만 원 이하	8백만 원+(8백만 원 초과분의 60%)
1억 원 이하	4천520만 원+(7천만 원 초과분의 55%)
3억 원 이하	6천170만 원+(1억 원 초과분의 45%)
3억 원 초과	1억 5천170만 원+(3억 원 초과분의 35%)

② 퇴직소득 산출세액

$$\text{퇴직소득 산출세액} = \{(\text{퇴직소득 과세표준} \times \text{기본세율}) \div 12\} \times \text{근속연수}$$

③ 경과조치(소득세법 부칙 제12852호, 2014. 12. 23.)

2016. 1. 1. 부터 2019. 12. 31. 까지의 기간 동안 퇴직한 자에 대해서는 2015. 12. 31. 이전 계산방법에 의한 산출세액과 2016. 1. 1. 이후 계산방법에 의한 산출세액에 아래에 따른 연도별 적용비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text{퇴직소득 산출세액} = (\text{㉞} \times \text{연도별 적용비율}) + (\text{㉟} \times \text{연도별 적용비율})$$

<연도별 적용비율>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㉞ 2015. 12. 31. 이전 계산방법	60%	40%	20%	0%
㉟ 2016. 1. 1. 이후 계산방법	40%	60%	80%	100%

다. 세율(소득세법 제55조)

퇴직소득은 퇴직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
1천 400만 원 이하	6%	-
5천만 원 이하	15%	1,250,000원
8천 800만 원 이하	24%	5,760,000원
1억 5천만 원 이하	35%	15,440,000원
3억 원 이하	38%	19,940,000원
5억 원 이하	40%	25,940,000원
10억 원 이하	42%	35,940,000원
10억 원 초과	45%	65,940,000원

## 09.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중점 확인사항(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는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사전에 방지 하기

위하여 회사에 제출된 증명서류에 대해 아래의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특히, 수동발급 공제 증명서류의 경우 중복공제, 과다공제의 사례가 많습니다.

구분	중점 확인사항
인적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을 새로이 추가하는 경우 중복공제 및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 원) 초과 여부를 근로자에게 직접 확인</li> <li>해당 과세기간 개시일(1.1) 전 사망자·국외이주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님</li> </ul>
주택자금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주자(개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li> <li>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을 통해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인지 확인</li> </ul> </li> <li>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li> <li>등기부등본, 대출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받아 주택의 근로자 본인 소유 여부, 국민주택 규모 여부(2013년 이전 차입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및 저당 여부, 대출 계약기간이 10년 또는 15년 이상인지 여부, 취득 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2013.12.31. 이전 3억 원, 2014.1.1.~ 2018.12.31. 차입분 4억원, 2019. 1. 1. ~ 2023. 12. 31. 차입분 5억원) 여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이상 보유 여부, 대출조건(비거치식, 고정금리 등) 확인</li> </ul> </li> </ul>
주택마련저축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표등본 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li> <li>장기주택마련저축을 소득공제 신청하였는지 확인</li> </ul>
신용카드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제외하였는지 확인</li> <li>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제외하였는지 확인</li> </ul>
연금계좌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을 연금계좌세액공제 항목으로 잘못 신청하였는지 확인</li> <li>수동으로 납입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중도해지(공제 불가) 또는 본인명의 여부 확인</li> </ul>
보험료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장성보험료의 경우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지 여부 확인</li> </ul>
의료비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비속 등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자 명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하였는지 확인</li> </ul> </li> <li>사내근로복지기금·보험회사(실손보험금)·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를 제외하였는지 여부 확인(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 공제 불가)</li> </ul>
교육비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녀 학원비는 취학 전(입학연도 1월~2월 까지)에 지출한 경우 공제가능</li> <li>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것인지 확인</li> <li>비과세 학자금을 지원한 경우 근로자가 교육비 공제를 제외하였는지 확인</li> <li>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한 교육비(과세제외)를 제외하였는지 확인</li> </ul>
기부금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동 제출 기부금영수증 상 '일련번호' 유무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련번호가 없는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음</li> </ul> </li> <li>기부금단체가 적격 단체에 해당하는지 영수증에 기재된 근거법령을 통해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별 종교단체의 경우 총회나 중앙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지 여부는 기부금영수증, 소속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유번호증'의 유무가 적격 기부금 종교단체 여부 판단기준이 아님에 유의</li> <li>- 사주, 공합, 택일, 작명 등 대가성 비용을 지출하고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은 공제불가</li> <li>-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는지 여부 확인 단, 기획재정부장관 지정이 없더라도 관련법령에서 적격 기부금단체로 규정한 법인도 있으므로 '기부금영수증 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을 확인하여 적격 기부금단체 여부 판단</li> </ul>
<p>월세액 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 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 가능) 여부 확인</li> <li>•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인지 여부 확인</li> <li>•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가 동일한지 여부 확인</li> <li>※ 2014.1.1. 이후 임대차계약서 상 확정일자를 받을 요건 삭제</li> </ul>

※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동일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가 공제 가능

###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10 - 연말정산》

Q1. 별도로 거주하는 어머니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입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1.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이거나 주민 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요건	출생연도	적용항목
70세 이상	1954. 12. 31. 이전	인적공제 추가공제 중 경로우대자 공제
65세 이상	1959. 12. 31. 이전	의료비 세액공제 중 경로자에 대한 의료비 지출
60세 이상	1964. 12. 31. 이전	기본공제 대상자 중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20세 이하	2004. 1. 1. 이후	기본공제 대상자 중 직계비속(입양자) 및 형제자매
6세 이하	2018. 1. 1. 이후	6세 이하의 출산·보육 수당 비과세 적용

Q2. 배우자가 10월에 해외 주식 양도로 양도소득금액이 200만 원 발생 하였습니다.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2. 배우자의 연간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이면 기본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금액의 경우 양도가액 - 필요경비로 계산하며 양도소득금액이 200만 원인 경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여 배우자의 인적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의 산정방법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란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의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되지 아니하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금액을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

Q3.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3.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월, 2월 포함)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초·중·고등학생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지급한 교육비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교육비

Q4.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장성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공제대상에 해당하나요?

A4.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보장성보험료는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득요건을 충족하여 귀하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장성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보장성보험의 계약유형별 비교

계약유형		내용
계약자	피보험자	
근로자	근로자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함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근로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 보험료공제의 피보험자는 주피보험자 외에 종피보험자도 포함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있어 피보험자는 주피보험자뿐만 아니라 종피보험자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Q5. 2024년에 배우자 주택을 양도하고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00만원을 납입하였습니다. 공제대상에 해당하나요?**

A5.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과세연도 중 계속 무주택 상태였던 세대주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2023년 중에 주택을 보유한 세대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주택자금관련 무주택 요건 비교

구분	공제대상자
주택청약저축납입액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로서 해당 과세기간 중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주택임차 차입금원리금상환액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세대구성원	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이 보유한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 주택을 보유한 경우

**Q6.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담보로 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6.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본인 소유의 주택에 대해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이자상환액을 납부 하는 경우에 연말정산시 공제하는 것으로서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배우자 명의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주택자금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작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 하는 방식과 해당 차입자가 신규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즉시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의 상환기간은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상환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Q7. 연금저축계좌 가입 시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얼마인가요?**

A7. 나이 및 총급여(종합소득금액)와 상관없이 연금저축계좌는 600만 원을 한도로 하고,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한 금액은 9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액 = ①+②(연 900만 원 한도)

- ①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연 600만 원 한도)
- ② 퇴직연금계좌납입액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액 예시

연금저축	퇴직연금	공제대상(연금+퇴직)
200만원	800만원	200만 원 + 700만 원 = 900만 원
700만원	200만원	600만 원 + 200만 원 = 800만 원
1,000만원	0원	600만 원 + 0원 = 600만 원
0원	1,000만원	0원 + 900만 원 = 900만 원

Q8. 월세 지급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를 모두 공제받을 수 있나요?

A8. 월세 관련 공제항목은 ①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과 ② '월세세액공제'가 있으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는 중복 공제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유리한 것으로 하나만 선택하여 공제하여야 합니다.

· 특별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중복 적용 여부

구분	특별세액공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가능
보장성보험료	보험료세액공제가능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불가
학원비	취학전아동 교육비세액공제가능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가능
	그 외 교육비세액공제불가	
교복구입비	교육비세액공제가능	신용카드등소득공제 가능
기부금	기부금세액공제가능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불가

▶ 관련 법규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시행령」 제121조의2)
- ⑥ 법 제126조의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의한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 · 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의한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 통행료
4.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5.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 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다)
6. 삭제 <2008.12.31 >
7.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제14항에 따른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의 구입비용
8.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9.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10.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신용카드, 작물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작물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물전자 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 遷 적용받은경우에한한다
- 10의2.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58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11. 법 제95조의 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12.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법 제121조의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것

**Q9. 별도로 거주하며 각자 근로소득이 있는 모녀의 의료비를 한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또는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도 한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A9. 의료비 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본인의 의료비와 합산하여 공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 1) 어머니의 의료비를 자녀분이 지출한 경우라면 자녀분이 어머니의 의료비에 a 대하여 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어머니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자녀분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2) 동일하게 배우자의 의료비를 남편이 지출한 경우라면 남편이 아내의 의료비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아내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남편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

● 의료비 공제 제출서류

- 의료비 지급명세서와 의료기관 및 양국이 발행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7조에 따른 계산서.영수증 또는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의료비 증명서류 중 본인부담이 아닌 금액, 입사 전 지출금액 등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지출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하고 공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의료기관 등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본인이 법에 따라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 되는 것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홈택스에 자료가 없거나 홈택스 자료와 실제 제출한 의료비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 등에서 직접 발급한 의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공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실손의료비

실손의료보험금은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며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에 공제하는 것이므로 24년 지출한 의료비의 실손의료보험금을 25년에 수령하는 경우 24년 귀속 연말정산시 의료비 지급액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하여야 합니다.

Q10. 올해 회사를 퇴직했고 다른 회사는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A10. 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 하며,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한 것은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통하여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등은 근로제공 기간 동안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 대상으로 하므로, 퇴사 후 지출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지출한 비용의 소득·세액공제 적용 여부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만 공제가능 항목	해당 과세기간중 지출한 금액 공제가능 항목
보험료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교육비세액공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주택자금소득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 영세납세자를 위한 복지세정 -

### 01.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제도란?

-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자의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1~4)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1. 가구유형

2024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단독가구	배우자 <sup>1)</sup> 와 부양자녀 <sup>2)</sup> , 70세 이상 직계존속 <sup>3)</sup> 이 모두 없는 가구
홀별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맞별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 <sup>4)</sup> 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1)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18 세 미만으로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자녀

3) 70세 이상으로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 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일 것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질병 등 일시퇴거 포함)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없음

4) 총 급여액 등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

##### 2. 소득요건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의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 기준금액 |

구분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2,200만 원	3,200만 원	4,400만 원
자녀장려금	해당없음	7,000만 원	

-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 ▶ 이자·종교인·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3. 재산 요건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6. 1.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하며, 재산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 1세대 (가구)의 범위 : 2023. 12. 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 ②, 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 부양자녀
-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 산정금액의 50%만 지급합니다.

4. 기타요건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일 것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거주자 (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 거주자 (배우자 포함)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이 아닐 것(근로장려금만 적용)

◎ 근로 · 자녀장려금 자동신청제도 확대 시행 안내

1. 자동신청제도란?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장려금 신청이 완료되는 제도입니다.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지급받으면 향후 2년간 자동신청 기간이 연장됩니다.

\* 2024년 60세 이상 및 중증장애인 대상 → 2025년부터 전 연령으로 확대

2. 유의사항

- ◆ 향후 자동신청이 되면 장려금 신청결과를 문자 또는 서면으로 안내합니다. 향후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서 자동신청 되지 않은 경우, 신청결과를 안내하지 않으니, 직접 홈택스\*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안내대상자 여부 및 자동신청 조회

- 다만, 자동신청되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신청자격이 충족된다고 판단되면, 직접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 입력 신청

◆ 자동신청 동의 후 향후 2년간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서 신청안내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2년간 자동신청 되더라도 모두 지급제외된 경우에는 자동 신청 동의효력이 소멸됩니다.

### ◎ 근로·자녀장려금 산정방법

◆ 가구 유형별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총급여액)과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및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을 말합니다.

◆ 총급여액을 '장려금산정표'의 해당구간에 적용한 후, 감액요인(자녀세액 공제 등)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 및 11의2

· 장려금 계산은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기타(취소·증빙·계좌 등) ⇨「계산해보기」에서 가능

###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① 홈택스(PC, 모바일앱)
- ② 모바일 안내문 “열람하기”, 서면 안내문 QR코드
- ③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 ④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전화상담 및 신청대리 요청

###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분 신청 및 지급

#### 1. 신청기간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 1. ~ 5. 31.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6. 1. ~ 11. 30.)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산정금액의 5%를 차감

· 근로소득자는 반기별 소득기준으로 반기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

로 봅니다.

2.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 장려금 정기신청자에 대하여 지급요건 등 심사를 거쳐 8월 말경에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

1.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2024년 귀속분)

- ◆ 2024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소득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 다만, 2025년 6월 정산 시에는 2024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반기별 지급 및 정산

- ◆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고 정산 시 지급
- ◆ 상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추정 연간근무월수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text{상반기총급여} + (\text{상반기총급여} \div \text{근무월수}) \times 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text{상반기총급여} \times 2$
- ◆ 하반기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 액을 산정합니다.

<2025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4년 하반기 소득분	2025. 3. 1.~2025. 3. 15.	2025년 6월 말	추가지급 또는 환수*
2025년 상반기 소득분	2025. 9. 1.~2025. 9. 15.	2025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

◎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 ◆ 근로(사업)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 환수와 2년 또는 5년간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10 - 장려금

### Q1.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1. 신청안내 대상인지 여부는 손택스·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모바일, PC)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안내대상자 여부 및 자동신청 조회

신청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 입력 신청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Q2. 금년 5월에 정기 신청을 했는데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할 수 있나요?

A2. 신청인이 신청기간인 5월에는 ARS(1544-9944), 홈택스(PC, 모바일앱)로 장려금 신청화면에서 직접 계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장려금융 계좌개설(변경/철회) 신고서를 제출하시거나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장려금융 계좌개설 (변경/철회)신고서를 제출하면 계좌 변경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본인 신분증과 해당 계좌의 통장 사본입니다.

#### ▶ 장려금 계좌 변경

【홈택스(모바일, PC)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

### Q3. 1가구 내에서 둘 이상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3. 1가구 내에서 둘 이상 거주자가 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정한 거주자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장려금 신청 순서(조특령 §100의7④)

1.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2.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단,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합의로 정한 자)

※ 가구 내 복수의 거주자가 각각 정기신청(5월) 및 기한 후 신청(6~11월)한 경우 정기신청한 거주자만 신청자로 인정하며, 가구 내 복수의 거주자가 각각 반기신청(9월, 3월)과 기한 후 신청 (6월~11월)한 경우 반기신청한 거주자만 신청자로 인정

**Q4. 현재 폐업 상태로 사업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데 장려금을 신청 할 수 있나요?**

A4.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은 전년도 기준이므로 신청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다 2024 년도에 폐업한 경우에도 총소득·재산요건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2025년에 신청 가능합니다.

**Q5. 언니랑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데 저랑 언니 모두 신청할 수 있나요?**

A5. 형제자매 등은 동일 주소에 거주하더라도 가구 구성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Q6. 외국인인데 한국인과 결혼하여 살고 있습니다. 저도 신청할 수 있나요?**

A5.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거나

**Q7. 이혼 후 친자녀는 전 배우자가 양육하고, 본인은 매달 양육비를 보내면, 친자녀는 누구의 부양자녀로 볼 수 있나요**

A7. 부양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판정합니다.

부양자녀가 있는 거주자 판단 순서(조특령 §100의5)

1. 해당 부양자녀와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하는 자
  2.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3. 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하여 산정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 장려금이 많은 자
  4. 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하여,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 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 (단,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합의로 정한 자)

**Q8. 은행에서 빌린 대출(부채)이 있는데 이 금액을 재산가액에서 차감 할 수 있나요?**

A8.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요건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일 것을 규정하고 있고 토지, 건물, 전세금, 승용차, 예금 등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부채를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Q9.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장성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공제대상에 해당하나요?**

A9.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보장성보험료

는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득요건을 충족하여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장성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Q10. 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인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10.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신고를 하지 않아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가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신청한 경우
- 자영업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 (150만 원) 이하인 자가 신청한 경우
-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경우
-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 공적연금, 퇴직, 종교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는 상용근로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 만 원)이하인 자가 신청한 경우

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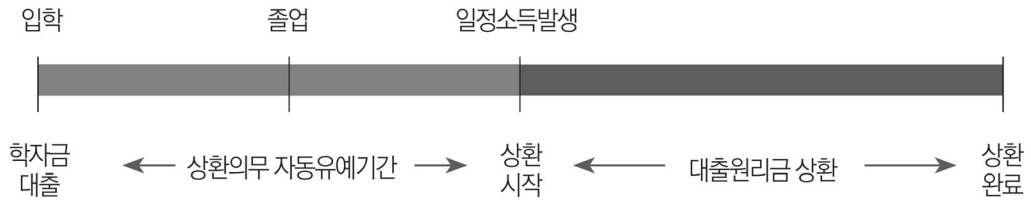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3.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소득만 있는 자
- 4의2. 제12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 소득만 있는 자
5.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만 있는 자
6.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만 있는 자
7. 제2호 및 제4호의 소득만 있는 자
- 7의2. 제2호 및 제4호의2의 소득만 있는 자
8.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 소득만 있는 자
9.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 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 02.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란?

◆ 대학생이 재학 중 등록금을 대출받아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출원리금은 소득 발생 후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제도

- 채무자는 대출시점부터 원리금상환의무를 부담하되,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때까지 상환의무 자동 유예됨



### ◎ 대출 및 상환 개요

#### ◆ 대출대상자

- (학부)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관한 협약을 맺은 대학에 재학 또는 입학예정인 학자금 지원 8구간(2025년 기준 가구 월소득 인정액 1,829만 원) 이하 가구의 대학생

- 대출 당시 만 35세 이하
- 신입생은 대학 입학허가 획득자, 재학생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장애인 학생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다자녀(3인 이상) 가구 학생은 및 자립준비청년(보호 아동 포함)은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
- 교내외 장학금 및 대출을 받는 경우 이중수혜 금지

- (대학원)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관한 협약을 맺은 대학원에 재학 또는 입학예정인 자로 학자금 지원 4구간(2025년 기준 가구 월소득인정액 548만 원) 이하 가구의 대학원생

- 대출 당시 만 40세 이하

#### ◆ 대출한도

##### • 학부

- 등록금 소요액 전액 (한도없음)
- 생활비 연간 400만 원(학기당 200만 원)

##### • 대학원

- 등록금 소요액 전액(석사과정\* 9천만 원, 박사과정\*\*1억 2천만 원 한도)
  - \* 석사과정: 일반·특수/전문기술석사 6천만 원, 전문/의·치의·한의계열 9천만 원
  - \*\* 박사과정(석박사 통합과정 포함): 일반·특수/전문기술석사 9천만 원, 전문/의·치의·한의계열 1억2천만 원
- 생활비 연간 4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 대출금리

- 교육부장관이 물가상승률, 실질금리 및 재원조달 금리 등을 고려하여 매학기 결정 고시
  - 2025년 1학기 : 1.7%
    - \* '18년 1학기~'19년 2학기 : 2.2%, '20년 1학기 : 2.0%, '20년 2학기 : 1.85%, '21년 1학기~2학기 : 1.7%

◆ 의무상환액

- 대출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상환율을 적용하여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함
  - 소득발생에 상관없이 채무자의 선택에 따른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에 납부(자발적 상환은 국세청에 납부 불가)

$$\text{의무상환액} = (\text{연간소득금액} - \text{상환기준소득}^1) \times \text{상환율}^2 - \text{소득 귀속연도의 자발적상환액}^3$$

1) 2025년 귀속 상환기준소득 : 1,898만 원(총급여 기준 2,851만 원)  
 2) 상환율 : 20% 또는 25% ('22년까지는 20%로 일괄적용)  
     ① 학부생 대출잔액만 있는 경우 : 20%  
     ② 대학원생 대출잔액만 있는 경우 : 25%  
     ③ 학부생 대출잔액과 대학원생 대출잔액이 모두 있는 경우 : 25%  
         - 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의무상환액이 대학원생 대출잔액보다 큰 경우는 20%를 적용  
 3) 소득 귀속연도에 채무자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으로 근로·사업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한도로 함  
 ☞ 상환기준소득은 매년 교육부 장관이 고시(2025년 귀속 상환기준소득은 2026년 통지 시 적용)

※ 취업 후 학자금 상황 누리집(www.icl.go.kr) 『상한금 간편계산』 코너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최소부담 의무상환액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여 산출된 의무상환액이 36만 원 미만인 경우 36만 원 상환
  - ※ 상속·증여재산에 의한 의무상환액은 최소부담 의무상환액 적용 제외

◎ 의무상환 방법

◆ 원천공제 대상자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으로 연말정산하는 사업소득자

1. 매월 원천공제 납부

- 국세청이 전년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 원천공제 대상 금액을 원천공제(7월~다음 해 6월)가 시작되기 전 채무자(5월) 및 고용주(6월)에게 각각 통지
  - 고용주는 채무자에게 급여지급 시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상환금 명세서에 의하여 상환내역을 신고 및 납부

2. 원천공제 미리 납부

- 국세청이 고용주에게 원천공제 대상자를 통지하기 전, 채무자가 원천공제 1년분 상환액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미리 납부하면 고용주에게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음
  - 1년분 미리 납부 : 5월 말까지 원천공제 통지액(1년분) 일시 납부
  - 분할납부 : 50%는 5월 말까지, 나머지 50%는 11월 말까지 납부

3. 원천공제 개시 도중 잔여액 납부

- 매월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던 중이라도 원천공제 통지액에서 이미 납부된 상환액을 차감한 잔여액은 일시에 납부가능하며 잔여액 납부 시 고용주가 원천공제를 중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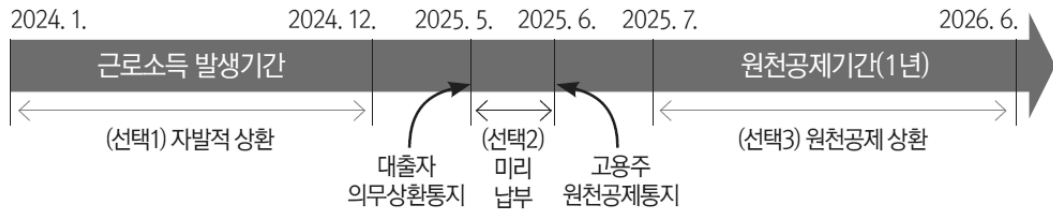
◆ 고지·납부 대상자

- 종합·양도소득 또는 상속·증여 재산이 발생한 경우 신고된 국세소득금액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계산하여 채무자에게 납부고지서 발송
  - 채무자는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됨
- 납부방법 : 납부고지서의 가상계좌로 납부(은행창구 수납 안됨)
  - ※ 납부가능시간 : 평일 09:00~21:00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제외)

◆ 자율상환제

-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미리 자발적으로 상환하면 해당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2018. 3. 13.시행)

< 의무상환액 납부방법 선택 >



◎ 상담 및 문의

- ◆ 국세상담센터 : ☎ 126번 ☞ 1번 '홈택스 상담' 선택 ☞ 4번 '학자금 상환' 선택
- ◆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

### 03. 1세대 1경차 유류비 지원

◎ 경차유류세 환급제도

1세대에 1경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유류구매카드'로 연간 30만 원의 유류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유류구매카드'는 신한·현대·롯데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승합)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 ① 경형승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 ② 경형승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 ③ 경형승용차와 경형승합차 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
- 다음의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① 장애인·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② 법인 차량 또는 개인명의 단체 차량
  - ③ 경형승용차 2대 이상 또는 경형승합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 ④ 경형승용차와 다른 승용차 동시 소유

⑤ 경형승합차와 다른 승합차 동시 소유 등

◆ 유류구매카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을 구비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카드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인터넷	www.lottecard.co.kr 누리집 → 카드 → 카드신청 → 제휴카드 → 복지/공공 → '경차smart롯데카드'	www.shinhancard.com 누리집 → 카드 → 신용카드 → 공공 / 단체 → '신한카드경차사랑 Life '	www.hyundaicard.com 누리집 → 카드안내·신청 → 제휴카드 → 공공 → '경차전용카드(유류세환급)'
전화	1899-9955 → 카드신청 접수	080-800-0001 → 2번 경차사랑 간편 접수	1577-6982 → 1번 현대카드 경차전용카드
방문 (본인)	롯데카드 영업점 및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신한카드·신한은행 영업점	

◆ 어떤 혜택을 받나요?

- 2026년까지 연간 30만 원의 한도 내 유류 결제금액에서 일정금액이 차감됩니다.
  - 신용카드 : 결제금액에서 리터당 할인금액을 차감하고 청구
  - 체크카드 : 결제금액에서 리터당 할인금액을 차감하고 통장 인출

◆ 주의할 사항은?

- 신용카드는 모든 물품을 구매할 수 있으나 유류세 혜택은 해당 경차의 연료 구매분에 제한됩니다.
-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 부정사용 시 할인받은 세액과 40%의 가산세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 04. 장애인 조세지원 제도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세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 소득세 경감 혜택

-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포함)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기본공제 : 연령에 관계없이 1인당 연 150만 원 공제
  - 장애인공제 : 장애인 1인당 연 200만 원씩 추가 공제
  - 보험료공제 : 장애인 1인당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 연간 100만 원까지 공제
  - 의료비공제 : 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
  - 교육비공제 : 장애인의 재활교육에 드는 비용을 전액 공제
    - 세액공제 : 각각 이 금액의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비과세저축 : 장애인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생계형 저축 중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 원(2015. 1. 1. 이후 가입시 5천만 원) 이하까지는 소득세·지방소득세 소득분·농특세를 면제
    -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취학·취업이 곤란한 자)의 경우도 공제대상 (비과세저축은 제외)
    - ※ 보험료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되고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는 근로소득자와 일정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에게만 해당됨

### ◎ 증여세 경감 혜택

- ◆ 장애인이 증여받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장애인이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증여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는 경우에는 5억 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증여자가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위탁하는 경우 포함).
  - 또한 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으로서 연간 4천만 원까지의 보험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합니다.

### ◎ 상속세 경감 혜택

- ◆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 1인당 1천만 원에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기대여명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납부기한 등의 연장 혜택

-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 등 장기 치료를 요하는 사유로 인하여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장합니다.

◎ 기타 간접적 세제 혜택

◆ 기부금 공제

- 개인이 장애인복지시설에 기부 시 기부금액의 20%(1천만 원 초과분 35%, 3천만 원 초과분 40%) 세액공제(한도 : 소득금액×30%)

※ 단,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의 경우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산입(법인의 경우 소득금액의 10% 한도 손금산입)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국내 공급 시)

- 「장애인 보조기기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또는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수입 시)

-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것으로서 장애인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개별소비세 면세

-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차

◆ 관세 감면

- 장애인용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 지방세 면세

-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 05.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

세법 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기업에 비해 추가 세금지원 혜택이 주어집니다.

### ◎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지원 내용

구 분	지원내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등 5년간 법인세(소득세)의 50%~고용 증가 시 최대 100%를 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제조업 등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5~30%를 매년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 (최대 1억 원)
설비투자 지원	• 기계 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투자시 투자금액의 10%, 신성장 사업화 시설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25% 세액공제
지방이전 지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 시 7년(5년)간 법인세(소득세) 면제, 그 후 3년(2년)간 50% 감면
최저한세 적용한도 우대	• 법인이 최소한 부담해야 하는 최저한세 적용기준을 일반 법인에 비해 3%~10% 포인트 우대 • 각종 감면적용 하기 전 과세표준 × 7%(일반법인 10%~17%) • 중소기업 졸업 시 유예기간 이후 3년간 8%, 그 이후 2년간 9%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제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대체투자의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
결손금 소급공제	• 직전사업연도에 납부한 세금 중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만큼을 소급해서 환급 적용 가능
접대비 인정범위 확대	• 접대비 인정한도 (①+②) ① 기본금액 : 3,600만 원(일반기업 : 1,200만 원) ② 수입금액 × 적용율
구조조정 지원	• 중소기업간 통합 시 양도소득세 과세유예
원천징수 방법 특례	•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반기(6개월)별로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가능
고용유지·증대 지원	• 고용 유지시 임금감소액의 10%, 시간당임금 증가액 15% 세액공제 •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증가분 50~100% 세액공제 • 정규직 전환 1인당 1천만 원 세액공제
기술이전 및 취득 지원	•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등 이전 소득 50% 감면, 기술대여 소득 25% 감면
상생결재제도 이용 지원	• 상생결재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의 (0.15~0.5%) 10% 한도 (지급기한별) 세액 공제

※ 일부 규정은 중견기업에도 적용되나, 공제액 등은 다를 수 있음

◎ 일반기업과 같이 적용받는 세금지원 내용

구 분	지원내용
공장(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세금감면	공장(본사) 이전연도부터 7년(최대 10년)간 세금감면 - 이전연도부터 5년(최대 10년)간 100%, 그 후 2년(최대 3년) 간 50% 감면
연구·인력 개발에 대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전연도 초과액의 25%(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와 해당연도 지출액의 0~2% (중견기업 8%, 중소기업 25%)*중 큰 금액 세액공제</li> <li>* 중소기업 졸업 시 유예기간 이후 3년간 15%, 그 후 2년간 10%</li> <li>신성장 ·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최대 30%(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 중소기업 최대 40%)세액공제</li> <li>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최대 40%(중소기업 최대 50%)세액공제</li> </ul>
농공단지 등 입주 기업에 대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 후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소득세)의 50% 감면</li> </ul>
시설투자에 대한 감면 (통합투자세액공제)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투자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본공제) 투자금액의 1%(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신성장 사업화 시설 3%(중견 기업 6%, 중소기업 12%),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15%(중소기업 25%)</li> <li>(추가공제) 투자금액이 직전 3년간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의 3%(국가전략기술 4%) (기본공제금액의 2배 한도)</li> <li>* 2021. 1. 1. 이후 과세표준 신고분부터 적용 (2020년, 2021년 투자분은 기존 투자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선택 가능)</li> </ul> </li> </ul>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첨단기술 및 연구소 기업에 대하여 소득발생후 3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그 후 2년간 50% 감면</li> <li>※ 고용인원, 투자누계액과 연계하여 일정한도 내 공제</li> </ul>
전자신고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방법으로 제출 시 1만 원~2만 원 세액공제</li> </ul>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해 5년간 25%~100% 감면</li> <li>※ 고용인원, 투자누계액과 연계하여 일정한도 내 공제</li> </ul>
사회공헌사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3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li> <li>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기업 3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li> </ul>
고용 증대기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시근로자 증가인원 1인당 중소기업은 700~1,300만 원, 중견기업은 450~800만 원, 일반기업은 400만 원 세액공제</li> <li>(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1인당 중소기업은 850 ~ 1,550만 원, 중견기업은 450 ~ 800만 원, 일반기업은 400만 원 세액공제</li> </ul>

## 06. 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도

◎ 사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금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부에서는 사업자가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의 파업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도를 통하여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납부기한 등의 연장

◆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납부기한 등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 : 「납부기한 등의 연장 승인신청서」를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납부기한 등의 연장 기간 : 기한만료일의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
- 고용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은 기한만료일(특별재난지역은 선포된 날부터 2년으로 한정)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 한정)

◆ 납부기한 등의 연장 사유

- ①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②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 ④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⑤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⑥ 금융회사 등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⑦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대리인 등이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⑧ ①~③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 (대상자) 아래 요건 모두 충족

- ① 2022. 12. 31. 이전에 개인사업을 모두 폐업하고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포함 직전 3년 평균 총수입금액이 15억 원 미만
  - ② 2020. 1. 1. ~ 2025. 12. 31. 기간 중, 개업 후 1개월 이상 계속 사업 또는 취업 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 ③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합계 체납액(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제외) 5천만 원 이하
- ◆ (특례 내용)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체납국세 분할납부(최대 5년) 허용
- ◆ (신청기간) 2020. 1. 1. ~ 2026. 12. 31.

## - 납세자 보호 제도 -

### 01. 모범납세자 우대제도

#### ◎ 세정상 우대혜택

세정상 우대혜택은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에게는 선정일로부터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 수상자에게는 선정일로부터 2년간 제공됩니다.

#### ◆ 세무조사 유예

- 단, 객관적이고 명백한 조세포탈 행위 등이 있을 경우 우대혜택을 배제합니다.

#### ◆ 납세담보제공 면제

- 기업의 자금 사정 악화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 등의 연장·납부 고지의 유예 및 압류·매각의 유예 시 체납 이력을 감안하여 조세일실 우려가 없는 경우 5억 원 한도 내에서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해 드립니다.

#### ◆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 이용

- 인천공항에 설치된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에서 간단한 사무 또는 휴식을 취하거나 납세지원 서비스 및 휴대용 통·번역기 대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사회적 우대혜택

### ◆ 철도운임 할인

- 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에게 선정일로부터 1년간 업무목적으로 주중 철도 이용 시 최저 10%, 최대 30%의 운임할인을 제공합니다.

### ◆ 공항 출입국 우대

- 적격심사를 통과한 모범납세자에게 정부포상·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수상자는 3년간, 국세청장·지방청장 표창 수상자는 2년간 공항 출입국 우대심사대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합니다.

###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 이용

- 국세청장이 배부한 모범납세자 스티커 부착차량은 선정일로부터 1년간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 시 우대

-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 시 한도 우대(30억 원), 보증료율 0.2%p 인하 및 보증비율 최대 90% 우대합니다(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에게 3년간).

### ◆ 보증지원우대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의 이행보증 보험료 10% 인하, 보증한도 10~30억 원 확대, 맞춤형 신용관리 서비스 무상지원 혜택을 제공합니다(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에게 3년간).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료 10% 인하, 보증한도 최대 50억 확대 혜택을 제공합니다(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에게 3년간).

### ◆ 국방부 물품·용역 적격 심사 시 가점 부여(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에게 3년간)

### ◆ 방위사업청 물품·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 시 가점 부여(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에게 2년간)

### ◆ 대출금리 경감, 금융수수료 면제 등 금융상 우대

- 신한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부산·경남·제주은행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모범납세자의 자금운용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대상 훈격과 우대기간 및 우대 내용은 은행별로 다르므로 이용 전 문의 필요).

◆ 의료비 할인혜택

- 강동경희대병원, 일산백병원, 을지대학병원, 부산 동의의료원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대상 혼격과 우대 기간 및 우대 내용은 의료기관별로 다르므로 이용 전 문의 필요).

◆ 관세청 세정지원(세무서장 표창 이상 수상자에게 1년간)

- 최대 1년 이내 납기연장 또는 최대 6회 분할납부(담보생략) 및 정기관세조사1년간 유예 및 정기 관세조사 1년간 선정 제외

## 02. 세금포인트 제도

◎ 세금포인트 제도란?

- ◆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개인 또는 법인(중소기업)이 납부한 세금(소득세·법인세)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세금포인트 부여

구 분	개 인	법 인
대상	모든 개인납세자	조특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부여대상 세목	종합소득·양도소득세 및 원천징수 되는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세	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부여시점	2000. 1. 1. 이후 연도부터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여	2012. 1. 1. 이후 연도부터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여
누적관리기간	2000년부터 누적 부여 (소멸제도 없음)	최근 5년 동안 부여 (6년 이전 납부실적 소멸)
부여기준	신고·자납세액 10만 원 당 1점	
부여일정	매년 3월 부여(전 년도 납부실적까지 부여) ※ 단, 원천징수 되는 소득세는 전전년도 납부실적까지 부여	

◎ 세금포인트 조회 및 사용방법 확인

- ◆ 국세청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에 로그인하여 세금포인트를 조회하거나 사용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손택스 →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포인트 혜택」

◎ 세금포인트 사용혜택

구분	상세내용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납부기한 등의 연장 등 신청 시 납세담보면제(개인·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세유예 신청 시 최대 5억 원까지 납세담보 면제</li> <li>* 담보면제 신청금액 = 세금포인트 × 10만 원</li> </ul> </li> </ul>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액채납자 재산 매각유예(개인·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천만 원 이하 소액채납자 재산 매각유예</li> <li>* 매각유예 신청금액 = 세금포인트 × 10만 원</li> </ul> </li> </ul>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개인·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5% 할인 구매</li> </ul> </li> </ul>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휴식 공간 및 납세지원 서비스 제공(5P 사용)</li> </ul> </li> </ul>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립중앙박물관 관람료 할인(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특별전 관람료 10% 할인 제공(3p 사용)</li> </ul> </li> </ul>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립세종수목원·국립백두대간수목원 관람료 할인(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람료 1천원 할인 제공(1p 사용)</li> </ul> </li> </ul>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운영하는 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3P 사용)</li> </ul> </li> </ul>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연간 1회 무상 이용(22~49p 사용)</li> </ul> </li> </ul>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립생태원·국립해양생물자원관 관람료 할인(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람료 1천원 할인 제공(1p 사용)</li> </ul> </li> </ul>

◎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 소개

◆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사용 전용 온라인 쇼핑몰

◆ 구매금액별 사용포인트 및 할인율

구매금액	10만 원 이하	10~20만 원	20~30만 원	30~40만 원	40만 원 초과
사용포인트	1P	2P	3P	4P	5P
할인율	5%				

◆ 쇼핑물 접근경로

※ 국세청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 → My홈택스 → 「세금포인트」 → 「세금포인트 혜택 바로가기」  
→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 입장하기」

### 03. 국선대리인 제도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 납세자가  
 청구세액 5천만 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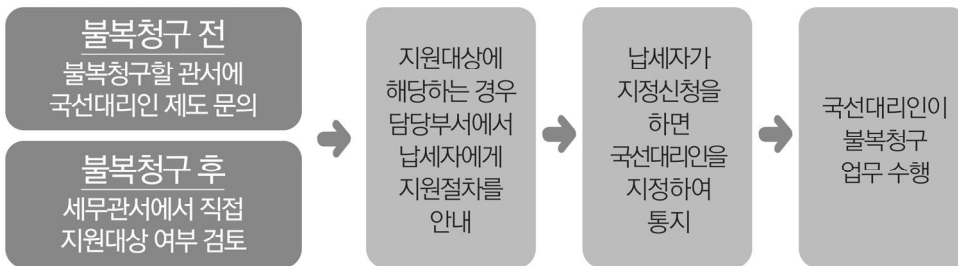
◎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 ◆ 청구세액 5천만 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제외

◎ 국선대리인은 누구?

- ◆ 국선대리인은 지식기부(무보수)에 참여한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를 말하며 2023년 12월 현재 322명의 국선대리인이 활동중입니다.
- ◆ 국선대리인은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검토·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 국선대리인 지원 절차



◎ 국선대리인 담당부서

- ◆ 과세전적부심사 : 세무서·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 국세청에 청구한 경우 국세청 심사2담당관실
- ◆ 이의신청 : 세무서·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 심사청구 :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 04.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나눔 세무사·회계사>가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세금문제 해결을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 ◎ 영세납세자지원단

- ◆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개인사업자, 영세중소법인, 사회적 경제기업, 장애인 사업장이 지원 대상입니다.
- ◆ 나눔세무사·회계사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와 관련된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단, 신고 대리는 지원하지 않으며 자산의 이전·보유에 따른 재산세(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소득세) 관련 사항등은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 신청방법

- ◆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문의는 국번없이 126 → 3번)
-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납세자보호 →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신청 및 관리

### ◎ 제공되는 서비스

- ◆ 무료세무자문 서비스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영세 개인사업자 등에게 세금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  
신규(예비) 창업자 등에게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법인세 정기신고 시까지 1:1 맞춤형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찾아가는 서비스  
전통시장, 다문화센터, 창업보육센터 등 영세납세자의 상담 수요가 밀집한 곳을 영세 납세자

지원단이 방문하여 세무상담 및 신고지원(신고 대리 서비스 제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폐업자 멘토링 서비스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 등에게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법인세 정기신고 시까지 1:1 맞춤형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05. 납세자권리현장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 납세자권리현장

납세자는 신고 등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탈루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되고 법령에 의해서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며,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없는 한 세무조사 기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받으며, 사업의 어려움으로 불가피한 때에는 조사의 연기를 요구하여 그 결과를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명백한 조세탈루혐의 등이 없는 한 중복조사를 받지 아니하며, 장부·서류는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납세자의 동의가 있어야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조사범위가 확대될 때, 그리고 조사가 끝났을 때 그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절차로 권익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을 때 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해 비밀을 보호받고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으며, 국제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06. 납세자보호위원회

### ◎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란?

◆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보호 사안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세무서,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설치된 기구입니다.

### ◆ 심의 대상

세무서·지방국세청 위원회	국세청 위원회
①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및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재심의 ①②③
② 중소기업납세자* 외 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 승인	
③ 중소기업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에 대한 이의 제기	
④ 세무조사 시 장부 등의 일시보관 기간연장	-
⑤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

\* 중소기업납세자: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 원 미만

###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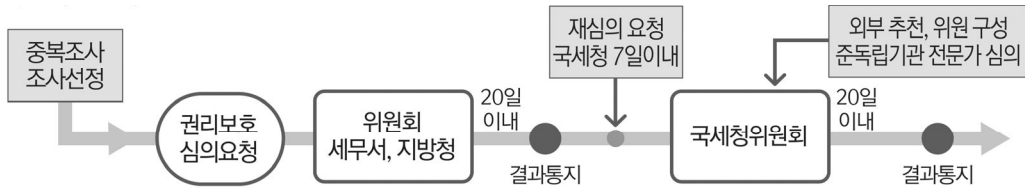
-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한 모든 위원이 조세·법률·회계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소속 위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민원인, 조사대상자 등에 대한 과세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고,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절차

#### ◆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세무서·지방국세청	국세청
심의 요청	세무조사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결정 통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심의 절차



## 07. 납세자보호담당관

◎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란?

◆ 세금의 부과·징수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는 납세자의 억울함을 해결하고 납세자 불만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국세전문 ombudsman(ombudsman)제도를 말합니다.

◆ 조사 부서와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세무조사가 세법에 따라 공정·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청탁이 없는 깨끗한 조사 환경 조성을 위한 예방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전국 세무관서(국변없이 126 → 3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역할은?

◆ 국세의 부과·징수과정에서 국세공무원이 위법·부당한 권한 행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잘못된 경우 시정해 드립니다.

◆ 부과된 세금 때문에 고민이 있으십니까?  
 •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이 부당한 권한행사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조사진행과정을 확인하여 잘못된 경우 즉시 조치해 드립니다.

◆ 세무조사결과 통지 내용에 불만사항이 있으십니까?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 ◆ 세금이 잘못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시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세금이 잘못 부과된 경우 바로 잡아드립니다.

## 08. 납세자권리보호요청 제도

### ◎ 권리보호요청 제도란?

- ◆ 세무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국세행정 집행(예정)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2009. 10. 26. 시행).

### ◎ 권리보호요청 대상은?

#### ◆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대상 예시

1. 세법·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에 명백히 위반되는 조사(「국세기본법」 제81조의 18 제2항제4호에 따른 위법한 세무조사를 포함)
2.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제2항제4호에 따른 부당한 세무조사를 포함)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제2항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범위 확대에 대해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세무조사 중인 국세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 가. 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세액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 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 과세기간·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 또는 중지하는 행위
  - 다. 납세자 또는 권한 있는 자료부터 동의를 받지 않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장부·서류·증빙 등을 열람·복사하거나 일시보관하는 행위
  - 라.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금품·향응 또는 업무집행과 직접 관련 없는 사적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마.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관련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바. 조사중지 기간 중 납세자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조사 또는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5. 기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6.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 일반 국세행정 관련 권리보호요청 대상 예시

1. 소명자료 제출·고충민원·불복청구·채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필요한 결정취소·환급·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사전예고(독촉) 없이 재산을 압류하거나 소명안내 없이 과세자료에 의한 고지처분을 진행하는 행위(관련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한 경우 제외)
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의해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해 열람 또는 제공 요구를 한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4.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금품·향응 또는 업무집행과 직접 관련 없는 사적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5.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관련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6.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납세자가 이미 제출 또는 소명한 자료 등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7. 과세자료 처리 시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는 행위
8. 신고내용 확인에 대한 적법 절차를 미준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9. 현장확인 시 출장 목적과 관련 없이 무리하게 장부·서류 등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 권리보호요청과 납세자보호위원회, 납세자보호 담당관의 권한

- ◆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적절한 권한을 행사하여 시정조치를 취합니다.
- ◆ 세무조사와 관련된 권리보호요청은 관할 세무관서장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고

- ◆ 납세자는 관할 세무관서장의 결정에 대해 7일(7일이 경과하기 전에 세무조사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그 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09. 억울한 세금의 권리구제 절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 행정소송

### ◆ 행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 고충민원 신청

### ◎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 ◆ 세무서·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업무감사 및 세무조사 과생자료 등에 의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을 때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무서·지방국세청에 과세예고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 청구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등에는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 청구서가 접수되면 해당 세무서·지방국세청·국세청에서는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 ◎ 이의신청

- ◆ 납세고지를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지한 세무서 또는 소관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세무서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소관 지방국세청에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다만, 이의신청인이 당초 결정기간 (30일)내에 항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 심사·심판청구

- ◆ 납세고지를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 결정기간 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결정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 또는 심판청구 가능)

※ 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는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 심사·심판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 행정소송

- ◆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에 의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세무관서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 고충민원

- ◆ 세법을 잘 알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불복청구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제도입니다.



#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FAQ

- 국세청 -

## 1. 제도 일반

### 1.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의 입법 배경은?

- '08년 금융위기 이후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국제적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12. 6월 OECD 재정위원회에서 BEPS\* 프로젝트를 추진을 결정하고, OECD/G20은 '15년 BEPS 프로젝트의 15개 권고안에 합의
  - \*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 다국적기업이 국가간 세법 차이, 조세조약의 미비점 등을 이용하여 경제활동 기여도가 낮은 저세율국으로 소득을 이전함으로써 과세기반을 침식하는 행위
- 이 중 Action 13(이전가격 문서화) 이행을 위해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자료인 통합기업보고서(Master file), 개별기업보고서(Local file), 국가별보고서(CbCR) 제출 의무를 국내 세법에 도입하였습니다.

### 2.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의 법적 근거는?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제35호입니다.
- ※ (참고)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6-7호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 및 제출에 대한 고시」 및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7-5호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및 작성범위에 대한 고시」는 '21.7.15.자로 폐지

### 3.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의무 불이행 시 제재는?

-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또는 국가별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보고서별로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료의 미(거짓)제출에 대한 과세당국의 시정요구에 불응할 경우 최대 2억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국조법 §87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

### 4.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의무자는?

- (통합·개별기업보고서)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이 1천억원을 초과할 것
  - ②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해당 과세연도 재화거래, 용역거래, 무형자산거래 및 대차거래 규모의 합계액이 500억원을 초과할 것
    - (통합기업보고서 대표제출) 둘 이상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통합기업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조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정하는 지배법인 등이 대표로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 (국가별보고서)
  - ① (최종 모회사가 내국법인·거주자인 경우)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국내 지배기업
  - ② (최종 모회사가 외국법인·비거주자인 경우)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상당액)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 관계회사
    - 다만,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한 국내 관계회사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면제
      - ㉠ 최종 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고 그 국가별보고서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에 따라 교환되는 경우
      - ㉡ 다른 국내관계회사가 국가별보고서를 대표하여 제출하는 경우
      - ㉢ 제3국에 소재하는 관계회사가 국가별보고서를 대리제출하고 그 국가별보고서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에 따라 교환되는 경우

## II. 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FAQ

### 1. 국외특수관계인과의 모든 거래가 국조법 제14조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사전승인 기간 동안 개별기업보고서 작성의무가 면제되는지?

-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전승인이 적용되는 대상기간 동안의 해당 국제거래에 대한 내용을 개별기업보고서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기타 정보는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일부 거래가 국조법 제14조에 따라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대상 거래 규모와 상관없이 개별기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지?

-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자 관정기준인 매출액 또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기간 동안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 개별기업보고서 작성시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이 적용되는 대상기간 동안의 해당 국제거래에 대한 내용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 3.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는 국조법 시행규칙의 서식을 그대로 이용하여 작성·제출해야 하는지?

-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는 시행규칙 서식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식에서 정한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개별기업보고서의 경우 '20.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별지 제13호 서식 부표 1~5]\*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23.12.31. 이전 개시한 과세연도에 대한 자료 제출은 '24.3.22. 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서식을 따라야 하며, '24.1.1. 이후 개시한 과세연도에 대한 자료 제출분부터는 개별 규정·서식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 4. 개별기업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였을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 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는 개별기업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고, 합리적 판단에 따라 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조법 §17 【가산세 적용의 특례】 제1항 제3호)

**5. 연도 중 흡수합병을 하는 경우 피흡수합병법인의 국제거래로 인해 국제거래금액이 500 억원을 초과한다면, 통합·개별기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되는지?**

- 내국법인이 과세연도 중에 합병이나 분할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해산한 법인의 1과세연도로 봅니다.(법인세법§8 ②)
- 따라서, 피합병법인에서 발생한 국제거래금액 중 합병등기일까지의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신고대상이며, 합병등기일 이후의 국제거래금액은 합병법인의 법인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 즉 피합병법인에서 합병등기일 이후에 발생하는 국제거래금액은 합병법인의 국제거래금액과 합산하여 통합·개별기업보고서 제출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6. 모법인 소재 국가에서는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국내 자회사는 통합 기업보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는지?**

- 통합·개별기업보고서 작성의무는 각 국가별로 입법화되어 있으며, 국내법상 통합기업보고서 제출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의무자는 모법인 소재 국가에서의 제출의무와는 관계없이 국내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 참고로 통합기업보고서는 다국적기업 그룹 최상위 지배법인의 연결재무제표 대상 법인에 대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군별 및 지주회사의 자회사별로 작성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7. 12월말 법인이 아닌 경우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 및 '국제거래정보 통합 보고서' 제출기한은?**

- 과세연도 종료월에 따른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연도종료월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23. 3월	'23. 9월	'24. 3월
'23. 6월	'23.12월	'24. 6월
'23. 9월	'24. 3월	'24. 9월

**8. 과세연도가 12개월이 아닌 경우, 매출액 및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 기준으로 제출대상 여부를 판단하는지?**

-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해당 과세연도에 사업을 경영한 기간이 1년 미만인 납세의무자의 경우, 매출액 및 거래규모의 합계액은 그 금액을 1년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다

음 자료 제출의무를 판단합니다.

(국조법 시행규칙 §22 【매출액 및 거래규모 합계액 계산방법】 )

- 다만, 세법개정 전인 '17.12.31. 이전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는 과세연도가 12개월이 아닌 경우에도 매출액 및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 9. 내국법인이 해외 지점과의 거래만 있는 경우 통합·개별기업 보고서 제출의무자인지?

- 현재 국조법상 내국법인의 해외 지점은 "국외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없는 경우 통합·개별기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 10. 개별기업보고서 작성 시 국내 모회사의 해외 지점과 모회사의 국외특수관계인인 해외 자회사와의 거래도 포함해서 작성해야 하는지?

- 해외 지점과 해외 자회사의 거래는 국조법상 "국제거래"에 해당하므로, 포함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 ■ 국조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나 거래 당사자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차(貸借),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4. "국외특수관계인"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11. Joint Venture인 A기업은 내국법인 B사가 50%, 외국법인 C사가 5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외국법인 C사(국외특수관계인인 최종모회사)가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통합기업보고서를 작성하지만 A사는 C사의 연결대상 자회사가 아니므로 C사는 A사를 통합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 작성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 경우 A사의 통합 기업보고서 작성 대상 및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자는 누구인지?

-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 법인의 범위는 "납세의무자가 포함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이며, 납세의무자가 포함되는 연결재무제표가 둘 이상인 경우 최상위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합니다.
- 한편, "납세의무자가 포함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합기업보고서 서식 상 [V. 전체 법인의 재무 및 세무상 현황]의 [1. 전체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연결재무제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① 납세의무자가 직접 종속회사가 포함된 통합기업보고서를 작성·제출
- ② 납세의무자의 최종모회사가 작성하는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
- 최종 모회사가 외국법인인 경우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는 "국의 지배주주가 있는 납세의무자로서 국외지배주주의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 5천만유로(상당액)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내 관계회사"입니다. (국조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
  - 따라서, 다국적기업 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규모나 중요성을 이유로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되는 등 국조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관계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가 됩니다.
  - 위와 같은 경우(Joint Venture 등)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관한 내용은 국가별보고서 관련 FAQ 6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조법 시행규칙 제20조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 특수관계 법인의 범위】

① 영 제3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란 국제회계기준(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공표하는 국제회계기준을 말하며, 그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각 국가에서 채택한 국제회계기준을 포함한다)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가 포함되는 최상위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 국조법 시행규칙 제21조 【국가별보고서 제출 대상 특수관계 법인 등의 범위】

영 제33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등"이란 그 납세의무자가 포함되는 다국적기업그룹을 구성하는 다음 각 호의 법인 등(이하 "관계회사"라 한다)을 말한다.

1. 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법인
2. 다국적기업그룹 내 지배법인에 종속되지만 규모나 중요성을 이유로 제1호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된 법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서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고정사업장

12. 통합기업보고서 서식 상 [I. 전체 법인의 조직구조 > 3. 전체법인의 지배 구조도(그림)]에서 다음 설명의 의미는?

- 사업군별(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군 내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배구조도 상 이를 표시한 후 [II. 전체 법인의 사업내용] 이하의 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국적기업 그룹이 수행하는 사업이 2개 이상의 사업군으로 분류되는 경우 사업군별로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때 구분한 사업군 내에 통합보고서 제출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업군은 [3. 지배 구조도]까지만 작성하고 이후는 생략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A사업군'과 'B사업군'을 가지고 있는 "갑" 그룹이 통합기업보고서를 작성할 때, 'A사업군' 내에는 통합기업보고서 제출대상자가 있으나 'B사업군' 내에는 제출대상자가 없는 경우 지배구조도까지 'A', 'B' 사업군을 모두 작성하되, [Ⅱ. 전체 법인의 사업내용]부터는 'A사업군'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사업군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생산·운송·마케팅·인사·기획·재무 등 일련의 활동들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다국적기업 그룹 내부 기업들의 총체로서 다른 사업군과 별개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군을 말합니다.
- 사업군별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 법인의 범위는 사업군 내 최상위 지배법인이 작성하는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법인들로 합니다.
- 마찬가지로, 지주회사에 의해 지배되는 다국적기업 그룹은 자회사별로 영위하는 사업이 상이한 경우 자회사별로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때 자회사 내에 통합보고서 제출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자회사는 [3. 지배 구조도]까지만 작성하고 이후는 생략 가능합니다.
- 자회사별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 법인의 범위는 당해 자회사가 작성하는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법인들로 합니다.

**13. A회사는 B회사(지주회사, 최종모회사)의 자회사이며 매출 1,000억원이 되지 않아 통합(개별)기업보고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종모회사인 B회사 또한 매출 1,000억원이 되지 않으며, 최종 모회사의 다른 자회사인 C회사는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여 통합(개별)기업보고서 제출대상자이다. 이 경우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방법은?**

-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 법인의 범위는 납세의무자가 포함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합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포함되는 연결재무제표가 둘 이상인 경우 최상위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합니다.
- 한편, 지주회사에 의해 지배되는 다국적기업 그룹은 자회사별로 영위하는 사업이 상이한 경우 자회사별로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위 경우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 법인의 범위는 C회사가 포함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하되, C회사가 포함되는 연결재무제표가 둘 이상으로서 최상위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이 B라면 B회사가 통합기업보고서 작성대상이 됩니다. 다만, C회사와 A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이 상이한 경우 C회사가 B회사를 포함하여 통합기업보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14.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지급보증 거래가 있을 경우, 통합(개별)기업보고서 제출요건 상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에 포함되는 금액은 지급보증수수료와 차입(보증)금액을 합한 금액인지?**

- 통합(개별)기업보고서 제출요건 상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은 재화거래, 용역거래, 무형자산거래, 대차거래의 합계액을 말하며,
  - 이는 국제거래명세서에서 [1. 매출거래 → ○10~○19의 합계(○17은 제외)] + [2. 매입거래 → ○31~○40의 합계(○38은 제외)]와 동일합니다.
  - 따라서 지급보증 용역과 관련하여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에는 수수료만 포함되며, 차입(보증)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또한, 대차거래 금액에는 평균 대여금(차입금)\*과 수입(지급)이자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대여금(차입금) 적수 ÷ 365(366)일

**15. 중국의 경우 통합기업보고서는 최종모회사의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개별기업보고서는 보고대상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6월 30일까지 준비해야 하므로 우리나라의 제출기한과 다른데,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 중국 현지기업의 경우 개별기업보고서를 6월말까지 작성·준비(과세당국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한국 모회사의 통합기업보고서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16. 국내 관계회사는 12월말 법인, 해외 모회사는 3월말 법인인 경우, 국조법 시행령 제 37조에 따른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사유가 될 수 있는지?**

- 제출기한 연장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는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출기한까지 국외특수 관계인의 과세연도 종료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국조법 시행령 제37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기한 연장】**

① 법 제16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화재·재난 및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2.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를 제출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
3. 관련 장부·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되거나 영치(領置)된 경우
4. 국외특수관계인의 과세연도 종료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 5. 자료의 수집·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려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17. 개별기업보고서의 [Ⅱ.특수관계 거래에 대한 설명 > 6. 특수관계거래에서 발생하는 지급액 및 수취액]의 지급액 및 수취액에는 과거 과세연도에 발생하여 작성대상 과세연도에 지급(수취)하는 것도 포함되는지?**

-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과거의 과세연도에 발생하여 작성대상 과세연도에 지급(수취)하는 경우 및 작성대상 과세연도에 발생하여 지급(수취)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18. a법인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이 500억원을 초과하고, 매출액도 1,000억원을 초과하여 개별·통합기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된다. 하지만 a법인의 최종모회사인 A법인은 지주회사로서 국제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a법인의 통합기업보고서 작성대상 법인의 범위는?**

- 납세의무자인 a법인이 포함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은 모두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지주회사인 A법인이 a법인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A법인을 최상위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으로 하여 통합기업보고서를 작성합니다.

### Ⅲ. 국가별보고서 FAQ

**1. 국가별보고서 관련 규정은 투자펀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OECD 국가별보고서 이행 가이드스 III-1)**

- 투자펀드에도 국가별보고서 관련 규정이 적용되며, 다국적기업 그룹을 결정하는 원칙은 회계 규정상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을 따르는 것입니다. 회계규정상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를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피투자회사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관계회사가 되지 않습니다.
- 반대로, 회계규정상 자회사가 투자회사의 투자활동과 연관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투자회사가 자회사를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면, 자회사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관계회사가 됩니다.

**2. 관계회사에서 비특수관계인의 소수주주 지분이 있는 경우, 국가별 보고서 제출대상 다국적기업 그룹을 확인함에 있어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에는 관계회사 매출의 100%가 포함되는지? 또는 비례 배분하여야 하는지? 이에 더하여, 국가별보고서에 포함될 관계회사의 재무자료는 100%인지 아니면 배분되어야 하는지?(OECD 국가별보고서 이행 가이드스 III-4)**

- 1조원(7억 5천만유로) 기준 적용시 최종모회사 관할당국의 회계규정상 관계회사의 비특수관계인 소수주주 지분이라도 전체가 통합되어야 한다면, 관계회사 매출의 100%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국가별보고서에 포함되는 관계회사의 재무자료는 100% 완전한 재무자료이며, 비례 배분되지 않습니다.
- 반대로, 회계규정상 소수주주 지분은 비례 배분되어 통합되는 것이 원칙이라면, 1조원(7억 5천만유로) 기준 적용시 비례 배분된 매출액 만이 포함될 수 있으며, 국가별 보고서에 포함되는 재무자료 역시 비례 배분된 자료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국가별보고서 제출기준에 있어 A국은 7억 5천만 유로 상당액의 자국 통화 기준을 사용하고, B국은 7억 5천만 유로 기준을 사용한다. 환율변동으로 인해 다국적기업의 본사가 소재한 A국의 기준금액이 7억 5천만 유로를 초과하였을 경우, 다국적기업의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은 7억 5천만 유로를 초과하지만 A국의 기준금액 미만이기 때문에 A국에는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다면, B국은 그 다국적 기업의 자국 소재 관계회사에게 현지제출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가?(OECD 국가별보고서 이행 가이드스 IV-1)**

- 최종모회사 소재지국이 2015년 1월 환율에 따라 7억 5천만유로 상당 금액 기준을 정해놓았다면,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그 기준금액미만인 다국적기업 그룹은 다른 통화의 기준금액을 적용하는 어떠한 과세당국에도 현지제출을 요구받아서 안 됩니다.
- 따라서 우리나라에 소재한 다국적기업 관계회사로서 다른 나라에 최종모회사가 소재하는 경우, 그 다국적기업의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최종모회사 소재국에서 정한 국가별보고서 제출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우리나라 소재 관계회사는 현지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 또한 우리나라에 최종모회사가 소재한 다국적기업의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에 미달하면, 그 다국적기업의 해외 관계회사는 전세계 어느 나라에도 현지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4. 다국적기업 그룹이 국가별보고서 제출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기준금액(1조원 또는 7억 5천만유로 상당액) 적용시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에는 어떠한 항목이 포함되는지?(OECD 국가별보고서 이행 가이드스 II-1, IV-2)**

- 적절한 회계기준을 이용하여 작성한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으로 영업외수익 및 특별수익 등

손익계산서상 수익항목을 모두 포함합니다.(국조법 시행규칙 §25 【연결 재무제표 매출액의 계산방법】 )

- (포함항목) 손익계산서의 매출액, 자산의 판매손익, 미실현이익, 이자수익, 특별이익 등
- (제외항목) 재무상태표의 순자산·지분 파트에 반영되는 포괄손익, 재평가손익, 미실현이익 등

**5. 외국계기업의 지점 및 연락사무소도 국가별보고서 제출대상인지? 제출대상인 고정사업장은 어떻게 기재하는지?**

- 국조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관계회사에 포함될 경우 제출대상이 됩니다.
- 지점의 경우 개별기업의 고정사업장으로서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므로 제출대상이며, 연락사무소의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예비적·보조적 활동만을 수행한다면 국가별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 고정사업장인 관계회사는 [3. 각 조세관할권별 다국적기업 그룹의 관계회사 목록](이하 [3. 관계회사 목록])에 아래와 같이 기재합니다.(OECD 국가별보고서 이행 가이드스 III-7)
  - (예시) 다국적기업 그룹 甲전자는 미국 소재 자회사 XYZ사를 관계기업으로 포함하고 있고 XYZ사는 멕시코에 고정사업장인 지점 보유

<甲전자가 제출하는 국가별보고서의 [3.관계회사 목록] >

조세관할권	조세관할권 내 관계회사
미국	XYZ사
멕시코	XYZ사 멕시코 지점 -미국 고정사업장

**6. 어떤 단체가 하나 이상의 비특수관계자인 다국적기업 그룹들(Ex.joint venture)에 의해 소유·운영되고 이러한 다국적기업 그룹들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다면, 그 단체는 그 다국적기업 그룹의 관계회사가 될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적용 가능한 회계규정상 비례연결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국가별보고서 서식의 [2. 각 조세관할권별 소득, 세금 및 사업 활동의 배분 내역]에는 비례배분 된 금액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1조 원(7억 5천만유로)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그 단체의 비례배분 된 수입금액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OECD 국가별보고서 이행 가이드스 III-5)**

- 국가별보고서 상 단체의 취급은 회계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각각의 비특수관계자인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되는 회계규정을 별도로 적용해야 합니다. 만약 적용가능한 회계규정 상 그 단체가 다국적기업 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다면, 그 단체는 그룹의 관계회사가 되며, 재무정보 역시 그 다국적기업의 국가별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국적기업 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단체

에 있어 전체 연결기준을 사용할 것인지, 비례연결기준을 사용할 것인지에도 이 회계규정은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 만약 적용가능한 회계규정 상 그 단체가 다국적기업 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단체는 관계회사가 아니며, 재무정보 역시 국가별보고서에 보고될 필요가 없습니다.
- 다국적기업 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단체에 있어 비례연결기준이 적용된다면, 1조원 (7억 5천만유로) 기준 적용시 그 단체의 전체 수입금액 중 비례배분된 금액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그 단체의 총 재무정보가 아닌 비례배분된 재무정보를 국가별 보고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7. 최종모회사가 외국법인인 경우로서 국내 관계회사의 결산월과 최종 모회사의 결산월이 다르며, 국가별보고서 최초 이행시기 역시 다를 경우 국내 관계회사의 국가별보고서 제출기한은?(예를 들어 최종 모회사의 과세연도가 '17.4.1.~'18.3.31.이고 국내관계회사의 과세연도는 '17.1.1~'17.12.31.이며, 최종모회사 소재지국의 국가별보고서 최초 이행시기는 '17.4.1.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일 경우)**

- 위 예시의 경우, 최종모회사가 '17.4.1.~'18.3.31. 과세연도에 대한 국가별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과세당국에 기한내 제출하면 되고,
  - 최종모회사는 국가별보고서 작성 시 [2. 각 조세관할권별 소득, 세금 및 사업 활동의 배분 내역]에 국내 관계회사의 '17.1.1.~'17.12.31. 또는 '17.4.1.~'18.3.31.에 해당하는 재무 자료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국가별보고서 FAQ 13번 참조)
  - 또한 국내 관계회사는 '17 과세연도에 대한 국가별보고서를 우리나라의 제출기한까지(예시의 경우 '18.12.31.까지)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현지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 ① 국외지배주주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경우
    - ② 국외지배주주가 소재하는 국가와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이중과세방지협정, 정보교환협정 또는 조세행정공조협약이 발효 중이나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당국간 협정이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
    - ③ 국외지배주주가 소재하는 국가에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시스템 실패가 발생하였음을 우리나라 과세당국이 관계회사에 통지한 경우
    - ④ 국내 관계회사가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를 기한내(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다만, 최종모회사의 국가별보고서 작성대상 기간이 2018.1.1.이후부터인 경우에는 '17 과세

연도에 대한 국내 관계회사의 현지제출 의무가 있으며, 최종모회사의 자발적 제출을 통해 현지제출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8. 국가별보고서의 [2. 각 조세관할권별 소득, 세금 및 사업 활동의 배분 내역] 작성 시 한 조세관할권에 하나 이상의 관계회사가 있는 경우, 합계 정보(aggregated data)를 작성해야 하는지 또는 관계회사 간 내부 거래 항목을 제거한 연결 정보(consolidated data)를 작성해야 하는지?(OECD 국가별보고서 이행 가이드스 II-3)**

- 각 조세관할권별 합계 정보를 작성해야 합니다.
- 다만, 각 조세관할권별로 연결정보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매년 일관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4. 부가정보]란에 "2. 각 조세관할권별 소득, 세금 및 사업 활동의 배분 내역 작성시 각 조세관할권별로 연결정보를 사용하였음"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9. 최종모회사의 직전 과세연도가 12개월이 되지 않을 경우, 국가별 보고서 제출의무 판단 기준금액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 '18.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는 직전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납세의무자의 매출액은 그 금액을 1년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국조법 시행규칙 §25 【연결 재무제표 매출액의 계산방법】 )

**10. 합병, 취득, 분할로 인해 소유권의 변동이 있을 경우,**

- 1)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는 어떤 영향을 받는지?
- 2) 국가별보고서에는 어떤 정보가 나타나야 하는지?  
(OECD 국가별보고서 이행 가이드스 VI-1)

- 합병/취득/분할이 일어난 과세연도에 있어,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가별 보고서 제출의무 유무는 직전 과세연도의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에 따릅니다. 이후에 일어난 합병/취득/분할로 인해 직전 과세연도의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을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 합병/취득/분할이 일어난 과세연도의 국가별보고서에 기재되는 정보에 있어, 합병/취득/분할된 관계회사의 어떤 재무자료가 국가별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예를 들어 비례배분된 재무자료 또는 1년 전체의 재무자료)에 대하여는 그룹 및 그룹의 관계회사를 결정하는 회계 원칙/기준\*에 따릅니다.  
\* 국제회계기준 :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공표하는 회계기준을 말하며, 그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각 국가에서 채택한 국제회계기준을 포함(국조법 시행규칙 제20조① 참조)
- 피합병그룹이 연도 중에(예를 들어 Y1.6.30.) 합병그룹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합병그룹의 Y0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5억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피합병그룹이

Y1.1.1.~Y1.6.30.에 대한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피합병그룹의 최종 모회사 거주지에서 이 기간에 대해 연결재무제표를 준비할 의무가 있는지에 따릅니다. 만약 이러한 의무가 없다면, 피합병그룹은 Y1.1.1.~Y1.6.30.에 대한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합병그룹은 Y1년도 국가별보고서의 [4. 부가정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① 합병그룹이 Y1.6.30.에 피합병그룹을 인수하였음
- ② 피합병그룹은 Y1.1.1.~Y1.6.30. 기간에 대하여 어느 국가에도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예시 #1>

Y1년도에 S그룹은 자회사를 매각했다. 그 후 자회사는 독립적인 E그룹이 되었다.

- (질문 I) S그룹은 Y1사업연도에 대한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 (답변) 그룹의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직전 사업연도(Y0)의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은 이후에 일어난 사건(합병/취득/분할)으로 인해 수정할 필요는 없다. S그룹의 Y0사업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한다면, S그룹은 Y1사업연도에 대한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질문 II) S그룹의 Y0사업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여 Y1사업연도에 대한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있을 경우, S그룹은 Y1사업연도에 대한 국가별보고서에 매각한 자회사의 비례배분 된 재무자료\*만을 포함해야 하는지?
  - \* Y1사업연도 시작일부터 매각일까지의 재무자료
  - (답변) S그룹의 국가별보고서에 매각한 자회사의 어떤 재무자료(1년 전체 또는 비례배분 된 재무자료)를 포함할 것인지 판단할 때에는 S그룹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른다. 만약 S그룹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상 매각한 자회사의 비례배분 된 재무자료를 연결재무제표에 포함해야 한다면, S그룹의 국가별보고서에는 비례배분된 재무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예시 #2>

Y1년도에 B그룹은 E그룹을 100% 취득하였다(흡수합병). B그룹과 E그룹은 각각 Y0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 이하이다.

- (질문) Y0년도의 B그룹과 E그룹 각각의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을 합계한 금액이 1조원을 초과할 경우, B그룹은 Y1사업연도에 대한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 (답변) 제출의무가 없다.

<예시 #3>

Y1.6.30일에 B그룹은 E그룹을 100% 취득하였다(흡수합병). B그룹, E그룹은 각각 Y0사업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한다.

- (질문 I) E그룹은 Y1.1.1.~Y1.6.30.에 대한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 (답변) E그룹의 Y1.1.1.~Y1.6.30.에 대한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여부는 E그룹이 연결재무제표를 준비할 의무가 있는지에 달려 있다.  
만약 E그룹의 최종모회사 소재지국의 회계규정 상 Y1.1.1.~Y1.6.30.에 대한 연결재무제표를 준비할 의무가 있다면, E그룹은 합병 전 단기 사업연도에 대한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다.  
하지만, E그룹의 최종모회사 소재지국 회계규정 상 Y1.1.1.~Y1.6.30.에 대한 연결재무제표를 준비할 의무가 없다면, E그룹은 단기 사업연도에 대한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다. 이 경우 B그룹은 국가별 보고서의 [4. 부가정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① 합병그룹이 Y1.6.30.에 피합병그룹을 인수하였음
    - ② 피합병그룹은 Y1.1.1.~Y1.6.30. 기간에 대하여 어느 국가에도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 (질문 II) B그룹의 Y1사업연도 국가별보고서에는 E그룹의 어떤 재무자료(1년 전체 또는 비례배분 된 재무자료\*)를 포함해야 하는지?
  - \* Y1.6.30.~Y1.12.31.까지의 재무자료
  - (답변) B그룹의 국가별보고서에 E그룹의 어떤 재무자료(1년 전체 또는 비례배분 된 재무자료)를 포함할 것인지 판단할 때에는 B그룹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른다. 만약 B그룹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상 E그룹의 비례배분 된 재무자료를 연결재무제표에 포함해야 한다면, B그룹의 국가별보고서에는 E그룹의 비례배분 된 재무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예시 #4>

Y1년도에 S그룹은 B그룹에게 자회사를 매각했다. B그룹의 Y0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은 1조원 이하이다.

- (질문 I) S그룹의 Y0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은 자회사 매각으로 인해 수정되어야 하는가?
  - (답변) 직전년도(Y0)의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은 Y1년도에 일어난 매각으로 인해 수정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S그룹의 Y0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한다면, S그룹은 Y1사업연도에 대한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다. 반대로 S그룹의 Y0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 이하라면, S그룹은 Y1사업연도에 대한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다.
- (질문 II) B그룹은 Y1사업연도에 대한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S그룹으로부터 취득한 자회사 매출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Y0년도의 연결재무제표 매

출액에 포함해야 하는지?

- (답변) 직전년도(Y0)의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은 Y1년도에 일어난 취득으로 인해 수정되어서는 안 된다. B그룹은 직전년도(Y0)의 연결매출액에 근거하여 Y1사업연도에 대한 국가별 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다.

<예시 #5>

Y1년도에 S그룹은 B그룹에게 자회사를 매각했다. S그룹과 B그룹의 Y0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은 각각 1조원을 초과하여 두 그룹 모두 Y1사업연도에 대해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다.

- (질문 I) S그룹의 Y1사업연도 국가별보고서에는 Y1년도에 B그룹에게 매각된 자회사의 재무 자료를 포함해야 하는가?
  - (답변) S그룹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른다. 만약 S그룹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상 B그룹에 매각된 자회사의 비례배분 된 재무자료\*를 연결재무제표에 포함해야 한다면 S그룹의 국가별보고서에는 비례배분 된 재무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 \* Y1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매각일까지의 재무자료
- (질문 II) B그룹의 Y1사업연도 국가별보고서에는 취득한 자회사의 비례배분 된 재무자료만을 포함해야 하는지?
  - (답변) B그룹의 국가별보고서에 취득한 자회사의 어떤 재무자료(1년 전체 또는 비례배분 된 재무자료\*)를 포함할 것인지 판단할 때에는 B그룹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른다. 만약 B그룹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상 S그룹으로부터 취득한 자회사의 비례배분 된 재무자료\*를 연결재무제표에 포함해야 한다면, B그룹의 국가별보고서에는 비례배분 된 재무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 \* 매수일부터 Y1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재무자료

**11. 국외에 최종모회사인 국외지배주주가 있는 납세의무자로서 국외지배주주의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 5천만유로 상당액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내 관계회사가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 및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국조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 국외에 최종모회사인 지배주주가 있는 납세의무자로서 국외지배주주의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 5천만유로(국외지배주주 소재국 법령이 정한 기준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내 관계회사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국조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를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은 자가 '국가별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조법 제8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2. A사는 내국법인으로서 X2년도에 과세연도를 6월말 법인에서 12월말 법인으로 변경함에 따라 과세연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됨**

- X1과세연도 : 20X1.7.1.~20X2.06.30.
- X2과세연도 : 20X2.7.1.~20X2.12.31.
- X3과세연도 : 20X3.1.1.~20X3.12.31.

위와 같은 경우

- ① 국가별보고서 제출대상 과세연도는 언제인지? 또한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은 어느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사용하는지?
  - ② 위의 사유 등으로 과세연도가 12개월이 아닐 경우 직전 과세연도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가별보고서 제출대상 여부를 판단하는지?
- X3과세연도의 경우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은 X2과세연도(X2.7.1.~X2.12.31.)의 매출액이므로 그 금액을 기준으로 X3과세연도에 대한 국가별보고서 제출대상 여부를 판단하되,
- A사는 X2과세연도에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X2과세연도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국조법 시행규칙 제25조)
- \* 단, '17.12.31.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는 과세연도가 12개월이 아니더라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아닌 1조원(7억 5천만유로 상당액)을 기준으로 국가별보고서 제출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13. 모회사와 자회사의 결산월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별보고서의 [2. 각 조세관할권별 소득, 세금 및 사업 활동의 배분 내역]에 포함되는 재무자료의 기준은?**

- 기본적으로 국가별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 일반 지침 > 작성대상기간(Period covered by the annual template)에 따라 다음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되, 매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 ① 모회사의 회계연도 종료일과 같거나, 회계연도 종료일 이전 12개월 내에 회계연도가 종료하는 자회사들에 대한 정보를 기재
  - ② 모회사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자회사 재무자료에 관한 정보를 기재

**14. 모회사의 회계기간이 12개월보다 길거나 짧은 경우, 국가별보고서의[2. 각 조세관할권별 소득, 세금 및 사업 활동의 배분 내역](이하 [2. 배분내역])과 [3. 각 조세관할권별 다국적기업 그룹의 관계회사목록](이하 [3. 관계회사 목록])에 어떤 정보가 포함되어야**

### 하는지?(OECD 국가별보고서 이행 가이드스 IV-3)

- 모회사의 회계기간이 12개월이 아닌 경우 모회사는 다음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매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 ① 모회사의 회계연도 종료일과 같거나, 모회사의 회계기간 내에 회계연도가 종료하는 자회사들에 대한 정보를 기재
  - ② 모회사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자회사 재무자료에 관한 정보를 기재
- 모회사가 ①방법 선택 시 아래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 각 상황에도 모든 관계회사는 [3.관계회사 목록]에 기재함이 당연)
  - [2. 배분내역]에는 모회사 회계기간이 12개월 초과 시, 관계회사의 1개 이상의 회계기간(12개월)에 대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음
  - 모회사 회계기간이 12개월 미만 시, 그 기간 내에 관계회사의 회계연도 종료일이 없어 [2. 배분내역]에 기재할 정보가 없는 상황. 만약 특정 국가 내에 모든 관계회사가 이런 경우에 해당 시, [2. 배분내역]에 그 국가명을 기재하고, 나머지 가로 행은 "0"을 기재
- 다음 'OECD 국가별보고서 이행 가이드스' 사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Guidance on the Implementation of Country-by-Country Reporting, BEPS ACTION 13, May 2024, p24~p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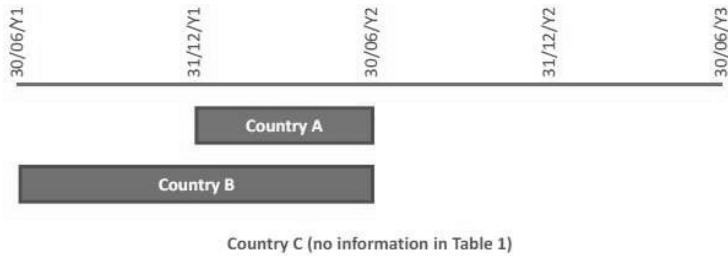
#### <사례 1: 모회사의 회계기간이 12개월인 경우로 (1)방법을 선택 시>

- A회사는 A국에 소재하는 다국적기업그룹 A의 최종모회사로서, 'Y1.12.31.로 종료하는 12개월 회계기간에 대한 연결 재무제표를 준비함(Reporting MNE임). A의 관계회사는 B회사(B국 소재)와 C회사(C국 소재)임. B회사는 6.30로 종료하는 회계기간(12개월)에 대한 개별재무제표를 준비하고 C회사는 12.31로 종료하는 회계기간(12개월)에 대한 개별재무제표를 준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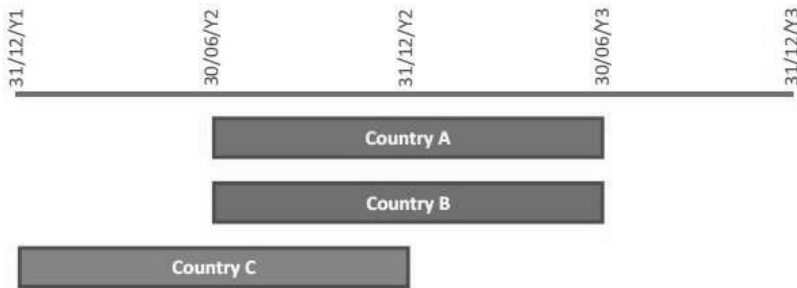
- A회사가 'Y1.12.31.로 종료하는 회계기간에 대한 국가별보고서를 작성 시, 「2.배분내역」에는 A국가를 기재하고 A회사의 'Y1.1.1.~'Y1.12.31에 대한 정보, B국가를 기재하고 B회사의 'Y0.7.1.~'Y1.6.30에 대한 정보, C국가를 기재하고 C회사의 'Y1.1.1.~'Y1.12.31에 대한 정보를 기재함

<사례 2 : 최종모회사가 회계기간 종료일을 변경→회계기간이 일시적으로 6개월, (1)방법 선택>  
 (1차년도) 사례1과 동일 ⇒ 「2.배분내역」에 기재되는 정보도 사례1과 동일  
 (2차년도) A회사는 회계기간 종료일을 변경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Y2.6.30.로 종료하는 6개월 회계기간에 대한 연결재무제표를 준비함.



- A회사 'Y2.6.30.로 종료하는 회계기간 국가별보고서 작성 시, 「2.배분내역」에는
  - A국가를 기재하고 A회사의 'Y2.1.1.~'Y2.6.30(6개월)에 대한 정보,
  - B국가를 기재하고 B회사의 'Y1.7.1.~'Y2.6.30(12개월)에 대한 정보,
  - C국가를 기재하되 C회사는 A회사 회계기간 내 종료하는 회계기간이 없으므로 나머지 가로 행은 "0"으로 기재함(「3.관계회사 목록」에 C회사를 기재, 「4.부가정보」에 설명을 기재)

(3차년도) 장차 A회사는 6.30.로 종료하는 12개월 연결재무제표를 준비할 것임



- A회사 'Y3.6.30.로 종료하는 회계기간 국가별보고서 작성 시, 「2.배분내역」에는
  - A국가를 기재하고 A회사의 'Y2.7.1.~'Y3.6.30에 대한 정보,
  - B국가를 기재하고 B회사의 'Y2.7.1.~'Y3.6.30에 대한 정보,
  - C국가를 기재하고 C회사의 'Y2.1.1.~'Y2.12.31에 대한 정보를 기재함.

※ Reporting MNE가 (1)방법 선택 시 「4.부가정보」에 기재할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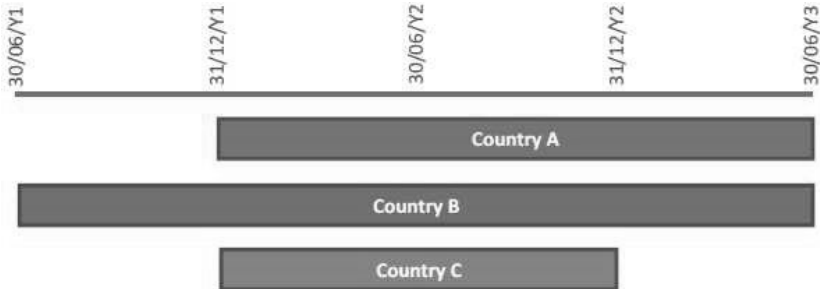
- 「2.배분내역」에 Reporting MNE 회계기간보다 길거나 짧은 회계기간을 갖는 관계기업의 회계기간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됨을 알리기 위해, 「2.배분내역」에는 회사명/소재지국 회계연도('xx.x.x.~'xx.x.xx)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을 기재
- Reporting MNE 회계기간 내에 회계기간 종료일이 없어 「2.배분내역」에 누락된 관계기업(들)이 있다면, 「2.배분내역」에는 보고 회계기간 내에 회계기간 종료일이 없는 다음의 관계회사(들)에 대한 정보는 포함하지 않음. 회사명 / 소재지국"을 기재

**<사례 3 : 최종모회사가 회계기간 종료일을 변경→회계기간이 일시적으로 18개월, (1)방법 선택>**

(1차년도) 사례1과 동일 ⇒ 「2.배분내역」에 기재되는 정보도 사례1과 동일



(2차년도) A회사는 회계기간 종료일을 변경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Y3.6.30.로 종료하는 18개월 회계기간에 대한 연결재무제표를 준비함.



- A회사 'Y3.6.30.로 종료하는 회계기간의 국가별보고서 작성 시, 「2.배분내역」에는
  - A국가를 기재하고 A회사의 'Y2.1.1.~'Y3.6.30(18개월)에 대한 정보,
  - B국가를 기재하고 B회사의 'Y1.7.1.~'Y3.6.30(24개월, 2개 회계기간)에 대한 정보,
  - C국가를 기재하고 C회사의 'Y2.1.1.~'Y2.12.31(12개월)에 대한 정보를 기재함

(3차년도) 장차 A회사는 6.30.로 종료하는 12개월 연결재무제표를 준비할 것임

※ Reporting MNE가 (1)방법 선택 시 「4.부가정보」에 기재할 정보

- 「2.배분내역」에는 Reporting MNE 회계기간(ex. 12개월 초과 시) 내에 회계연도가 종료하는 특정 관계 회사의 1개 이상의 회계기간(12개월)에 대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음
- 「2.배분내역」에 Reporting MNE 회계기간보다 길거나 짧은 회계기간을 갖는 관계기업의 회계기간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됨을 알리기 위해 "「2.배분내역」에는 회사명/소재지국 회계연도(xx.x.x.~'xx.x.xx)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을 기재
- Reporting MNE 회계기간 내에 회계기간 종료일이 없어 「2.배분내역」에 누락된 관계기업(들)이 있다면, "「2.배분내역」에는 보고 회계기간 내에 회계기간 종료일이 없는 다음의 관계회사(들)에 대한 정보는 포함하지 않음. 회사명 / 소재지국"을 기재

### 15. 국가별보고서의 "수익"에는 어떠한 항목이 포함되는지?(OECD 국가별보고서 이행 가이드스 II-1, II-7)

-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영업외수익, 특별이익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포함항목) 손익계산서의 매출액, 자산의 판매손익, 미실현이익, 이자수익, 특별이익 등
  - (제외항목) 재무상태표의 순자산·지분 파트에 반영되는 포괄손익, 재평가손익, 미실현이익, 다른 관계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서 지급지에서 배당으로 취급되는 배당금<sup>1)2)</sup> 등
    - 1) 수익에서 제외되므로 일관되게, 세전이익(손실)에서도 제외함
    - 2) (상기 배당금 관련 세액) 상기 배당금이 세전이익(손실)에서 제외되므로 관련세액도 납부세액(현금주의), 납부세액(발생주의)에 포함하지 않아야 함

"지급지에서 배당으로 취급되는 배당금"이란 국가별보고서 [표2. 각 조세관할권별 소득, 세금 및 사업 활동의 배분 내역] 작성에 사용된 지급자의 자료 출처에서 배당으로 처리된 지급금을 의미합니다.

▶ 국가별보고서에서 관계기업 간 지급금은 지급자와 수령자의 과세관할권에서 일관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 ✓ 지급자의 조세관할권에 대한 국가별보고서 [표2] 작성을 위해 사용된 자료 원천에서 지급금을 배당 이외의 것(ex. 이자비용)으로 취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금은 수령자의 조세관할권에서 수익과 세전이익에 포함
- ✓ 지급자의 조세관할권에 대한 국가별보고서 [표2] 작성을 위해 사용된 자료 원천에서 지급금을 배당으로 취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금은 수령자 조세관할권의 수익과 세전이익에서 제외

- 이 경우 손익계산서상의 총액을 순액으로 조정할 필요는 없으며, 회계규정에 따라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된 금액을 포함하면 됩니다.
  - 예를 들어 이자수익은 이자비용과 별도로 작성되므로, 이자수익금액은 총액으로 수익에 포함되며, 유가증권처분이익(손실)은 총액이 아닌 순액이 포함되게 됩니다.

### 16. 국가별보고서의 납부세액(현금주의), 납부세액(발생주의)의 작성기준은 어떻게 되는지?(OECD 국가별보고서 이행 가이드스 II-4)

- 납부세액(현금주의)은 보고대상 과세연도 동안 귀속을 불문하고 실제로 납부된 세액을 의미하며, 과거 과세연도에 대한 경정과 관련된 세액도 포함합니다. 세금 환급액은 납부세액(현금주의)에서 차감됩니다.
- 납부세액(발생주의)은 당해 과세연도 과세소득과 관련된 법인세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연법인세 제외)
- 세액에는 법인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등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모두 포함합니다.

### 17. 국가별보고서상 법정자본금, 유보이익, 유형자산(현금 및 현금등가물 제외) 작성 기준은? 어떤 상황에서 [2. 배분내역]에 양수 또는 음수 값이 기재될 수 있는지?

- 법정자본금은 재무상태표상 순자본금을 의미하며, 적립금/자본잉여금은 제외합니다.
- 유보이익은 재무상태표상 이익잉여금을 의미합니다.
  - 관계회사가 재무제표에 유보이익을 음수값으로 보고하는 경우, 이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보고해야 합니다.
  - 한 조세관할에 두 개 이상의 관계회사가 있고, 음수의 유보이익이 있는 경우 양수의 유보이익과 합산하여 순액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 이 경우 [4. 부가정보]에 "xx조세관할권 유보이익은 음수값을 포함하고 있음"을 기재해야 합니다. (OECD 국가별보고서 이행 가이드스 II-6)
- ㉓ 유형자산(현금 및 현금등가물 제외) 항목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 재무상태표상 총자산-현금 및 현금성자산-금융자산-무형자산
- 국가별보고서 제출법인은 매년 동일한 회계정보를 일관되게 사용한다면 자율적으로 자료\*를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어 [2. 배분내역]에 양수(+) 또는 음수(-)값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연결재무제표, 개별 재무제표, 규제 재무제표, 내부 관리목적 계정
  - 어떤 상황에서 [2. 배분내역]에 양수 또는 음수값이 기재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Guidance on the Implementation of CbCR, BEPS ACTION 13, May 2024」p10~p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8.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다자간 협정(CbC MCAA)에는 서명하였으나, 우리나라와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당국간 협정이 활성화되지 않은 국가에 최종모회사가 소재한 국내 관계회사의 경우에는 현지제출 의무가 있는지? 또한 당국간 협정이 활성화된 국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 국가별보고서 제출기한까지\* 우리나라와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당국 간 협정'이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에만 국내 관계회사의 현지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 \* (예시) '23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인 경우 '24.12.31.까지
- '24. 8월 현재 우리나라와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당국간 협정'이 활성화된 국가 명단은 다음과 같으며,
  - 최신 업데이트 정보는 OECD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www.oecd.org/tax/beps/country-by-country-exchange-relationships.htm](http://www.oecd.org/tax/beps/country-by-country-exchange-relationships.htm)

< 국가별보고서 교환협정 활성화 국가(95개국, '24.8월 현재) >

건지	그리스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라이베리아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마카오	말레이시아
맨섬	멕시코	모나코	모리셔스	몬트세랫	몰디브
몰타	미국	바레인	바베이도스	바하마	버뮤다
벨기에	벨리즈	불가리아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산마리노
세이셸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아루바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앵귈라	에스토니아	영국
영국령버진아일랜드	오만	오스트리아	우루과이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저지	중화인민공화국
지브롤터	체코	칠레	카자흐스탄	카타르	캐나다
케냐	케이맨제도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퀴라소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태국	터크스 케이커스제도	터키	튀니지	파나마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페로제도	페루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호주	홍콩	콩

19. [4. 부가정보]란에 기재하여야 하는 정보는?

※ 「OECD 국가별보고서 이행 가이드선(2024년 5월)」를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추후 서식이나 기재해야 하는 정보 내용 등이 달라질 수 있음

- [2. 배분내역]은 각 조세관할권별 함께 정보를 작성함(국가별보고서 FAQ 8번, OECD 국가별보고서 이행 가이드선 II-3 참고)
  - 다만, 각 조세관할권별로 연결정보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년 일관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2. 배분내역] 작성 시 각 조세관할권별로 연결정보를 사용하였음"을 기재

- [2. 배분내역]에 주로 사용한 자료의 출처\*를 기재하되, 그 외 자료출처를 사용하거나 자료의 출처가 변경된 경우 이를 기재(OECD 국가별 보고서 이행 가이드스 IV-4 참고)
  - \* 연결재무제표, 개별 재무제표, 규제 재무제표, 내부 관리목적 계정
- 일반적으로 세금환급금은 환급받은 과세연도의 납부세액(현금주의)에 반영하여 기재(국가별 보고서 FAQ 16번, OECD 국가별보고서 이행 가이드스 II-4.2 참고)
  - 단, 예외적으로 [2. 배분내역] 작성에 사용된 적절한 회계기준에 따라 다국적기업 그룹의 수익으로 반영된 경우에 "세금환급금이 수익에 포함되었고, 납부세액(현금주의)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기재
- [2. 배분내역] 유보이익 기재 시 음수 값에 대한 별도 수정 없음(국가별보고서 FAQ 17번, OECD 국가별보고서 이행 가이드스 II-6 참고)
  - 한 조세관할에 둘 이상의 관계회사가 있는 경우 유보이익 음수값은 양수 값과 합하여 순액으로 기재하고, 이 경우 "xx조세관할권 유보이익은 음수(-) 값을 포함하고 있음"을 기재
- 그룹의 존재 또는 그룹의 관계회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사용한 회계기준\*이 무엇인지 기재(OECD 국가별보고서 이행 가이드스 III-3 참고)
  - \* IFRS, 미국GAAP, Local GAAP, 그 외의 경우 구체적으로 기재
- 회계규정상 소수주주 지분은 비례배분 되어 통합되는 것이 원칙이라면, 1조원(7.5억 유로) 기준 적용 시 비례배분 된 매출액만이 포함될 수 있으며, 국가별보고서에 포함되는 재무자료 역시 비례배분 된 자료가 사용될 수 있음(국가별보고서 FAQ 2번, OECD 국가별보고서 이행 가이드스 III-4 참고)
  - 비례배분 된 자료 사용 시, 종업원수 또한 비례배분 된 값이 기재되어야 하므로 "xx국 소재 A관계회사의 종업원수는 A관계회사의 재무자료가 비례배분 됨에 따라 비례배분 하여 보고"라고 기재
- 모회사 회계기간이 12개월이 아닌 경우 [2. 배분내역]과 [3. 관계회사 목록]에 포함될 부가정보(국가별보고서 FAQ 14번, OECD 국가별보고서이행 가이드스 IV-3.4 참고)
  - "[2. 배분내역]에는 A관계회사/xx국 회계연도('xx.xx.xx.~'xx.xx.xx.)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
  - "[2. 배분내역]에는 모회사 회계기간 내에 회계기간 종료일이 없는 다음의 관계회사에 대한 정보는 포함하지 않음. A관계회사/xx국"
  - [2. 배분내역]에 모회사 회계기간 내에 회계연도가 종료하는 특정 관계회사의 1개 이상 회계기간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 관련 설명을 기재
- Y0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또는 7.5억유로)을 초과하는 피합병그룹이 연도 중(예를 들어 Y1.6.30.)에 합병그룹에게 인수되는 경우, 피합병그룹의 Y1.1.1.~Y1.6.30.에 대한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여부는 피합병그룹의 최종모회사 소재지국 회계규정 상 이 기간에 대한 연결재무제표를 준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따름(국가별보고서 FAQ 10번, OECD 국

가별보고서 이행 가이드스 VI-1 참고)

- 만약 이러한 의무가 없다면 피합병그룹은 이 기간에 대한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으며, 합병그룹은 Y1년도 국가별보고서[4. 부가정보]란에 다음 사항을 기재
  - ① 합병그룹은 Y1.6.30.에 피합병그룹을 인수하였음
  - ② 피합병그룹은 Y1.1.1.~Y1.6.30. 기간에 대해 어느 국가에도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 [2. 배분내역]의 수익, 세전이익(손실), 납부세액(현금주의), 납부세액(발생주의)에는 다른 관계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서 지급지에서 배당으로 취급되는 배당금, 그 배당금에 상응하는 세액은 포함하지 아니함.(국가별보고서 FAQ 15번, OECD 국가별보고서 이행 가이드스 II-7 참고)
  - 단,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 시, "다른 관계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서 지급지에서 배당으로 취급되는 배당금이 xx국 세전이익에xxx원 포함되어 있음"을 기재

## IV. 통합보고서 제출방법

### 1.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 2021.12.1.부터 개별기업보고서와 통합기업보고서는 홈택스에서, 국가별보고서는 AXIS 포털에서 각각 전자제출합니다.
  - ※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는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 제출
  - (개별·통합기업보고서) 홈택스(www.hometax.go.kr) >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 과세자료 제출 > 소득·법인세 관련 자료제출 > 개별·통합기업보고서 제출/내역조회
  - (국가별보고서) AXIS 포털(www.axis.go.kr) > 법인(국가별보고서) 제출법인 정보등록 및 국가별보고서 제출·수정
  - \* AXIS 메인화면 '법인 공지사항'(우측하단) 중 국가별보고서 제출 매뉴얼 참고

### 2. AXIS 포털을 통해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구체적인 제출방법은?

- 국가별보고서는 AXIS 포털에서 ①직접 입력, ②엑셀 파일\* 업로드, ③XML 파일 업로드 방식 중에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서식 : 법인 공지사항 > 국가별보고서 제출 매뉴얼의 첨부파일(국가별보고서 엑셀파일)
  - 직접 입력 또는 엑셀 파일 업로드 방식으로 제출할 경우 한글과 영문을 동시에 입력할 수 있도록 기능이 구현되어 있으므로 제출매뉴얼을 참고하여 작성·제출하면 됩니다.
  - XML 파일 업로드 방식을 선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된 XML 파일을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는 전산 제출만 가능한지? 한글과 영문으로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지?

-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국가별 보고서)는 홈택스와 AXIS 포털을 통한 전자제출만\* 가능합니다.
  - \* (개별·통합기업보고서)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제출(국가별보고서) AXIS 포털(www.axis.go.kr)에서 전자제출
-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중 통합기업보고서와 개별기업보고서는 한글로 작성된 보고서를 제출하면 되나, 국가별보고서는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된 보고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 통합기업보고서를 영문으로만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추가로 한글로 작성한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공동인증서를 분실 또는 재발급 받은 경우 어떻게 하는지?

- 공동인증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인증기관을 통해 재발급 받은 공동인증서를 AXIS 포털\*에서 변경 등록하여야 합니다.
  - \* 경로 : 법인(국가별보고서) 제출법인 정보등록 및 국가별보고서 제출·수정 > 공동인증센터(우측상단) > 공동인증서 변경

### 5. 전산자료 작성을 위한 엑셀 업로드 및 XML 스키마 작성지침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 (엑셀 업로드) AXIS 포털 > 법인(국가별보고서) > 자료실 > '국가별보고서 제출 관련 엑셀 업로드 파일' 참고
- (XML 스키마 작성지침) AXIS 포털 > 법인(국가별보고서) > 자료실 > '국가별보고서 제출을 위한 XML 작성지침(2017년, XSD 파일, 샘플파일 포함)' 참고
  - '국가별보고서 제출을 위한 XML 작성지침'은 OECD 국가별보고서 XML Schema User Guide를 기초로 하여 AXIS 포털 제출 양식에 맞게 재구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국가별보고서 XML Schema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 6. AXIS 포털 접속을 위한 ID를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AXIS 포털에 접속하여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 후 '아이디 찾기\*(좌측 하단) 기능을 통해 포털 사용자 ID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입력항목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인증서 인증



#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개정안 시행

- 중소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벤처투자조합의 자금 유동성 제고 및 재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간배분 절차 간소화 조항을 포함한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을 26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1. 원활한 재투자를 위해, 벤처투자조합의 중간배분 절차 간소화

기존 벤처투자조합은 출자금 중간배분 시마다 조합원 동의를 의무로 하고 있어, 소액 회수금의 출자자 배분에도 매번 조합원 총회 승인을 필요로 하는 등 복잡하고 장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벤처투자조합 규약에 사전에 정한 출자금 배분 방식이 있는 경우, 14일 이전에 조합원에게 사전보고 후 배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를 통해 벤처투자조합의 중간배분 절차를 간소화하여 원활한 재투자를 유도하고, 벤처투자 자금의 유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2. 인수합병(M&A) 벤처펀드의 상장기업 투자 한도 확대

벤처투자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22)'에서 인수합병(M&A) 벤처펀드의 상장법인 투자 한도 확대(기존: 펀드 출자금액의 20%)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한도를 60%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인수합병(M&A)펀드의 인수·합병 방식을 유연화하여 회수 활성화와 투자자금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봉덕 벤처정책관은 "이번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의 시행으로 벤처투자조합의 자금 운용 유연성이 증대되어 더욱 건강하고 역동적인 벤처투자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여 벤처투자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5조(벤처투자조합의 출자 및 배분) ② 벤처투자조합은 영 제34조제1호 또는 제41조의 2제1항에 따른 출자금 총액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출자원금을 조합원에게 배분할 수 있다.	제5조(벤처투자조합의 출자 및 배분) ② 벤처투자조합은 영 제34조제1호 또는 제41조의 2제1항에 따른 출자금 총액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출자원금을 조합원에게 배분할 수 있다. <u>다만, 사전에 조합원 동의를 얻어 조합 규약에서 정한 출자원금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방식에 따라 배분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조합원에게 사전보고 후 배분할 수 있다.</u>
[별지1] 벤처투자조합의 표준규약 제35조(배분원칙) ① ~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분배(배분)금액 및 시기는 조합원의 동의로 정한다.	[별지1] 벤처투자조합의 표준규약 제35조(배분원칙) ① ~ ③ 동일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조합원 동의를 얻어 조합 규약에서 정한 출자원금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방식에 따라 배분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조합원에게 사전보고 후 배분할 수 있다.
제7조(벤처투자조합의 투자 의무) ①·② (생략)	제7조(벤처투자조합의 투자 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p>&lt;신 설&gt;</p>	<p>③ 영 제35조제6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비율”이란 60퍼센트를 말한다.</p>
<p>제10조(행위제한의 예외) ①·② (생략)</p> <p>③ 영 제37조제4호에서 “그 밖에 중소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출자금 총액의 60 퍼센트 이상을 제7조제2항제2호다목에 투자하는 목적으로 결성하는 벤처투자조합이 다른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인수하는 경우를 말한다.</p>	<p>제10조(행위제한의 예외)</p> <p>③ 영 제37조제4호에서 “그 밖에 중소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출자금 총액의 60 퍼센트 이상을 영 제35조제7항제3호에 투자하는 목적으로 결성하는 벤처투자조합이 다른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인수하는 경우를 말한다.</p>



# 부가세영세율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 재징환율

통 화 명	6월 2일(월)	6월 4일(수)	6월 5일(목)	6월 9일(월)	6월 10일(화)
미 달 러 (USD)	1375.70	1376.90	1373.80	1359.00	1358.90
위 안 화 (CNH)	191.17	190.90	190.98	189.25	188.84
일 본 엔 (JPY)	956.78	956.75	962.18	939.48	939.47
유 로 화 (EUR)	1562.73	1566.29	1569.09	1550.21	1552.07
영 국 파 운 드 (GBP)	1852.79	1861.98	1861.77	1839.41	1841.51
캐 나 다 달 러 (CAD)	1002.33	1003.64	1004.61	992.26	991.72
홍 콩 달 러 (HKD)	175.44	175.51	175.14	173.19	173.16

통 화 명	6월 11일(수)	6월 12일(목)	6월 13일(금)	6월 16일(월)	6월 17일(화)
미 달 러 (USD)	1359.90	1368.80	1362.90	1366.80	1363.60
위 안 화 (CNH)	189.18	190.62	189.39	190.88	189.93
일 본 엔 (JPY)	938.35	948.94	950.22	945.59	942.66
유 로 화 (EUR)	1554.64	1575.08	1579.81	1576.81	1576.25
영 국 파 운 드 (GBP)	1836.20	1856.85	1855.79	1852.56	1851.56
캐 나 다 달 러 (CAD)	994.88	1001.61	1002.02	1006.18	1004.90
홍 콩 달 러 (HKD)	173.28	174.40	173.64	174.13	173.71

통 화 명	6월 18일(수)	6월 19일(목)	6월 20일(금)	6월 23일(월)	6월 24일(화)
미 달 러 (USD)	1361.70	1373.20	1379.60	1369.40	1381.90
위 안 화 (CNH)	189.65	190.85	191.86	190.76	192.32
일 본 엔 (JPY)	936.87	946.87	948.60	935.54	947.16
유 로 화 (EUR)	1563.03	1576.30	1586.75	1573.17	1602.66
영 국 파 운 드 (GBP)	1828.35	1842.70	1858.46	1838.35	1871.02
캐 나 다 달 러 (CAD)	994.92	1002.67	1007.12	996.00	1006.34
홍 콩 달 러 (HKD)	173.47	174.94	175.75	174.46	176.05

통 화 명	6월 25일(수)	6월 26일(목)	6월 27일(금)
미 달 러 (USD)	1365.00	1360.90	1357.60
위 안 화 (CNH)	190.31	190.07	189.56
일 본 엔 (JPY)	941.90	938.20	939.26
유 로 화 (EUR)	1584.77	1588.17	1587.10
영 국 파 운 드 (GBP)	1858.38	1861.10	1863.17
캐 나 다 달 러 (CAD)	994.46	992.02	995.02
홍 콩 달 러 (HKD)	173.89	173.38	172.96

※ 상기의 기준·재정환율은 금융결제원의 자회사인 (주)서울외국환중개에서 고시한 내용으로 외화외상매출의 회계반영, 결산평가와 부가세영세율 과세표준계산시 적용됩니다.

※ (주)서울외국환중개 홈페이지(<http://www.smbs.biz>, 전화 : 3705-5500)에서 당일의 기준환율을 보실 수 있습니다.